석사학위논문

미결수용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1992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황 인 석

미결수용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etter Treatment for
the Unconvicted Prisoner.)

지도교수 황 진 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2년 6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황 인 석

논 문 인 준 서

황인석의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 9 9 2 년 6 월 일

심사위원장 鄭 成 澤

심사위원 童 振 洙

심사위원 鄭 周 澤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감사의 글

어려운 역경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본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황진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정성택 교수님, 정주택 교수님, 이종수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인 내조속에서 늦게나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사랑스런 아내와 묵묵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준 처남에게 감사하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 후배 및 주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정신적 지주로서 뒷받침 해주신 아버님과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주신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작은 결실의 열매를 받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논문은 보다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조그마한 밑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6월

황 인 석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미결수 수용에 관한 이론적배경 5

제1절 미결수용의 법적성질과 인권보장 5

1. 법적 성질 5

2. 인권 보장과 제한 6

제2절 미결수용기관 8

1. 구치소 8

2. 교도소 8

3. 대용 구치소 9

제3절 미결수용과 수사 및 사법절차와의 관계 10

1. 수사절차와의 관계 10

2. 재판절차와의 관계 11

제4절 미결수용절차 11

1. 미결수용 개시 11

2. 미결수용자 분류수용 12

3. 미결수용의 종료 15

제5절 미결수용 및 처우상 특례 15

제3장 미결수용자의 처우현황과 문제점 18

제1절 미결수용자의 수용 및 처우현황 18

1. 미결수용자의 수용현황 18

2. 미결수용자의 처우현황 23

제2절 미결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34

1. 교정시설의 문제점 34

2. 미결수용자 수용의 문제점 36

3.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37

4. 인권 및 권익보호의 문제점 39

5. 징벌 및 권리구제의 문제점 40

6. 교정조직의 문제점 42

제4장 미결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 49

제1절 교정시설의 개선방안 50

1.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50

2. 교정시설의 전문화 51

3. 구치시설의 개선 52

제2절 미결수용자 수용의 개선방안 56

1. 과밀수용의 해소 56

2. 분류수용의 개선 57

제3절 미결수용자 시설내 처우의 개선방안 60
1. 신입자 생활지도 교육의 개선 61
2. 상담문제의 개선 63
3. 시설문제의 개선 64
4. 여가시간 활용의 개선 67
제4절 미결수용자 인권 및 권익보호의 개선방안 71
1. 인권 개선 71
2. 권익보호 74
제5절 미결수용자 징벌 및 권리구제의 개선방안 80
1. 징벌집행의 개선 80
2. 권리구제의 방안 82
제6절 교정조직의 개선방안 86
1. 교정기구의 개선 86
2. 교도관 문제의 개선 91
제5장 결 론 105
부표 111
참고문헌 112
영문초록(Abstract) 120

표 목 차

〈표 3-1〉 미결 1일 평균수용 인원 19

〈표 3-2〉 인구대비 미결수용 인원 20

〈표 3-3〉 미결수용자 성별 인원 21

〈표 3-4〉 미결수용자 입소사유별 인원 21

〈표 3-5〉 미결수용자 출소사유별 인원 22

〈표 3-6〉 미결 외국인수용자 국별 인원 23

〈표 3-7〉 신입자 생활지도 교과과목 26

〈표 3-8〉 급여의류 등의 품목 및 수량 30

〈표 3-9〉 교정중앙행정기구표 43

〈표 3-10〉 교정시설 현황 43

〈표 4-1〉 미결수용자 분류수용 현황 59

〈표 4-2〉 미결수용기관의 조직개편 90

그 림 목 차

〈그림 4-1〉 밴담의 파노프치콘 시설 53

〈그림 4-2〉 구치시설의 거실 개선현황 55

부 표 목 차

〈부표〉 미결수용자 동작시간표 111

국 문 초 록

미결수용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한성 대학교
행정 대학원
일반행정전공
황 인 석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교정처우에서 소외시되었던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의 증가, 누범 및 재범율의 증가에 대한 예방책으로 미결수용자 부터 시설내 교정처우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1장에서는 미결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교정시설에 입소되면서 부터 교정처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그동안 10년동안 미결수용기관에서 직접 실무에 임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점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논문 및 관계자료를 종합하였고, 직원 및 미결수용자와 출소자의 의견을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결수용자의 이론적 배경으로 법적성질, 인권보장과 제한사유, 미결수용기관, 수사 및 사법절차, 미결수용절차, 미결수용자의 처우상 특례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미결수용자의 처우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미결수용자의 수용과 처우현황으로는 수용·시설내 처우·수용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결수용자의 처우의 문제점으로는 교정시설, 수용, 시설내처우, 인권및 권익보호, 징벌 및 권리구제, 교정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결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으로 ①교정시설에서는 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고, ②수용에 있어서는 과밀수용해소·분류수용개선을, ③시설내 처우로서는 신입자 생활지도교육·상담·여가시간 활용의 개선을, ④인권개선으로는 미결수용법 재정·미결수용기관 독립설치·흡연의 허용을, ⑤권익보호로는 자변원칙준수·의료·외부교통권 개선을, ⑥징벌 및 권리구제 개선으로는 징벌문제의 개선과 권리구제로는 행정심판·사법적 권리구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 청구·행형 옴부즈만 제도를, ⑦교정조직에서는 교정기관의 개선·교도관문제의 개선을 제시했다.

이와같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이론과 수용·처우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교정조직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면서 범죄예방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미결수용 개시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범죄자 누범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범죄가 발생하는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고경봉 교수는 "범죄는 충돌 및 감정조절 능력을 감소시키는 중추 신경계의 손상, 개인의 정서적 취약성, 폭력가정, 열악한 사회적 환경 등 생물정신사회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의한 최종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1]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난 20여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간성의 상실, 가치관의 혼란, 불확실한 미래 등 사회 구조적 모순에 따른 현상과 더불어 범죄의 흉폭화, 집단화 및 재범율과 누범율의 증가가 범죄율의 증가를 가속시키고 있다.

범죄는 인간관계를 저해시키며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불안 요소이며, 범죄인 자신도 파멸해 가는 원인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인을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모순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일단 범죄 혐의자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교정기능을 총 동원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범죄의 재범과 누범을 감소

---

1) 「평화신문」, (1990.11.25), P.10.

시킬 수 있는 역활로서 중요하다.

범죄자나 범죄혐의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된 이후 교정처우가 시작되므로, 범죄 혐의자가 수사나 재판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교정 시설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교정처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장차 형이 확정되었을 때 받을 교정처우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수용자의 예상은 범죄재발에 상당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피의자·피고인)는 교정 시설내에서의 교정 처우를 수형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수용시설에서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교정처우가 중요한 이유는 통계숫자로 볼때 다음과 같다.

1990년에 미결 신입자가 116,272명이고, 전년도(1989년)에서 이월된 인원이 23,504명으로 이를 합하면 139,776명인데, 이중에서 미결로 있다가 출소한 자가 91,705명으로 미결 전체 수용자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전체미결수용 인원의 65.6%나 되는 범죄 혐의자가 어떠한 교정처우도 없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도에 전체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29,013명 인데, 이중에서 초범은 10,120명으로 35%이고 누범자가 18,893명으로 65%를 차지 한다. 누범자중에서 재범자가 7,261명으로(전체수형자의 25%) 누범자의 38.4%를 차지하고 있는것은,[2] 지금까지 미결수용자의 교정처우에 있어서 소외된 현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설내 교정처우를 통해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같이 범죄 혐의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 수용자에

---

2)법무부, 「법무연감(1991)」, PP.662-663.

대해서 형사적인 적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교정 시설내에서 미결 수용자에 맞는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미결수용자를 그 대상으로한 시설내 교정처우에 중점을 두고있다. 교정처우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문화적 배경과 법제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우리나라는 시설내 처우만을 교정처우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보다 좁게 파악하여 교도소 및 보호 감호소에서 행해지는 교정처우를 기본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미결수용자를 위한 구치소에서의 교정처우까지를 포함하여 교정처우라고 부르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내 처우 중에서 구치소·구치지소·교도소의 미결수용실·경찰서 유치장의 미결수용실에 수용중인 미결수용자의 교정처우를 연구 대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면에서 경찰서 유치장의 미결수용실에 대해서는 제외하였다.

미결수용자의 교정처우로서 시설내 처우, 권익보호 및 교정조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계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미결교정처우와 관련된 기존의 단행본과 각종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을 검토하고, 법무부

---

3)박재윤, "교정발전의 방향과 과제", 「교정」, (1987년 5월호), P.29. 이러한 입장은 행형법 제1조가 일반수형자 이외에 미결수형자를 포함하며, 구치소의 업무가 현행직제상 법무부 교정국의 일원으로 소관되어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행형법 제2조 5항 참조).

교정국과 법무연수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 하였다. 또한 관계법령, 신문 및 기타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미결수용자 교정처우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같이 각종자료와 본인이 구치소에서 10년간 직접 현장근무를 통해서 취득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견해와 미결수용자 및 미결수 중 출소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찰하고자 했다.

제2장 미결수 수용에 관한 이론적배경

미결수용이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병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구속과, 사형이 확정된 자를 형 집행전까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는 작용을 통칭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미결수용자가 타인에게 악습을 전파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신의 범죄성향을 상승시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1]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성질과 인권보장, 미결수용기관, 수사 및 사법절차관계, 미결수용절차, 미결수용상의 특례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제1절 미결수용의 법적성질과 인권보장

1. 법적 성질

미결수용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의 구금이라는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므로 국가의 행정작용에 속한다. 이는 또한 형사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재판과 직결되는 점에서 사법적 영

---

1)정갑섭, 「교정학」, (서울:을지서적,1990),P.428; 김화수, 「행형법학」, (서울:동민출판사,1991), P.456.

향을 많이받는 행정작용이다.

이러한 특질로부터 많은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미결수용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개입이 적지 않음 또한 이러한 법적 성질에서 연유된다 할 것이다.

2. 인권 보장과 제한

미결수형자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일반사회인과 동일하게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결수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미결수용이 갖는 자체의 고유한 본질의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제한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보다 더 축소되어야 한다.

가. 미결수용의 본질에 의한 제한

미결수용자의 구금의 본질상 당연히 제한이 불가피한 국민의 권리로는 ① 거주이전의 자유(헌법제14조), ②직업 선택의 자유(헌법제15조), ③주거의 자유(헌법제16조) 등은 구금의 본질상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나. 특별 권력관계에서 오는 제한

미결수용자와 구치소 등 수용기관과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결수용기관의 수용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수용시설내에서 화재, 폭동이나 난동, 도주,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제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불가피한 기본권으로는 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헌법제21조), ②교육을 받을 권리(헌법제31조),

③근로의 권리(헌법제32조), ④ 통신의 비밀(헌법제18조)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수용시설의 보안유지 및 질서유지상 필요불가결한 범위내에서만 제한 되어야 한다.[21]

다.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제한

미결수용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당해자의 범죄와 관련, 인적·물적등의 증거인멸 방지에 있으므로 이에대한 기본권의 불가피한 제한으로서 통신의 비밀(헌법제18조)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면담요지를 기록하고(행형법시행령 제58조1항), 서신(수·발신)의 검열(행형법시행령 제62조)을 실시하며, 미결수용자중 공범관계에 있는자를 분리수용하는(행형법시행령 제171조1항) 등의 필요불가결한 제한이 따른다.

라. 예산상의 제한에서 오는 제한

구치소 등 미결수용시설을 관장하는 교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예산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예산에 따른 제약에 의하여 일반사회인보다는 수용자의 처우가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수용자 처우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매년 적절한 소요예산의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주어진 예산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적 운영으로 수용자 처우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2)이돈희, "행형법의 재문제", 「대한변호사 협회지」, 제133호, (1987.9), P.10.

제2절 미결 수용 기관

우리 행형법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결수용자를 직접 수용관리하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미결수용시설이 있으며, 이외에도 행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도 미결수용실에 준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구치소

구치소는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구치소를 둘수 있다"(행형법 제2조5항)는 규정으로 미결수용 업무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구치소가 신설되었다. 구치소가 신설된 것은 대통령령 제3140호(1967.7.7)에 의거 교도소직제 개정으로 서울교도소를 서울구치소로 개편한 이후로 현재에는 성동구치소, 영등포구치소, 부산구치소, 인천구치소와 천안구치지소가 있다.[3]

2. 교도소

우리 행형법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소년교도소내에 미결수용실을 둔다"(행형법제2조4항)라고 규정하여, 독립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구치소의 부족에 따라 미결업무를 동일한 법무부 교정국 산하에 있는 교정시설인 교도소·소년교도소에 별도의 미결전담 수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3)법무부, 「한국교정사(1987)」, P.1127.

현재 미결수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정시설은 1990년도말 기준으로 24개 교도소와 1개 소년교도소가 미결 수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결 수용실은 하루 속히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 구치지소를 신설하여 미결수용관리가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용 구치소

행형법 제68조에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라고 하여 대용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대용구치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찰서 유치장은 아직도 18개소나 되고 있으며,[4] 검찰청 지청으로서 전용 구금시설인 교정시설이 없는 곳도 20개 지청이나 된다. (서울 서부·남부지청은 영등포구치소에, 서울 북부·동부는 성동구치소에 수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기관이 아직도 전문화는 불구하고 경찰관서 유치장에 수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장이나 교정처우에 소홀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구치시설을 검찰청 지청별로 수용할 수 있도록 증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결수용을 위한 대용구치소(교도소)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대용구치소(교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을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거론 되었다.

①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에서 피고인, 피의자, 구류형수형자, 단기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수형자 등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호송중의 피고인, 피의자, 수형자 등을 일시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

4)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1992)」, P.122.

경우.

③인근교도소의 수용능력상 여유가 없어 수용할 수가 없는 경우 등의 실제상 부득이한 필요성에 의거한 것이라는 것 등이다.[5]

제3절 미결수용과 수사 및 사법절차와의 관계

1. 수사절차와의 관계

미결수용자로서 검사의 공소 제기전의 단계에 있는 자를 형사 피의자라 하며, 형사 피의자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자이므로 검찰 또는 검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상 필요한 때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고 이에 의하여 미결수용기관에서는 교도관의 계호아래 수용중인 형사 피의자를 소환한 검사에게 호송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형사 피의자가 미결수용기관에서 검찰청으로 옮겨졌다고 하나 성질상 미결수용의 연장에 속하므로 계호를 담당한 교도관의 책임하에 그 신병은 엄격히 확보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에 미결수용의 목적에 따라 수사상의 필요에 의한 담당 검사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지만, 미결수용자의 신분에 의하여 부과된 교도관으로서 직무상의 제반 준수의무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관리에 신중을 기 하여야 할 것이다.

---

5)법무부, 「교정예규(1982)」, PP.465-466; 권태정 "재소자 분류수용 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의 현실과 진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PP.178-179.

2. 재판절차와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미결수용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행정작용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절차보다 재판절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재판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원의 소환이 있을 때에는 수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의 계호책임 아래 호송하여 미결수용자의 신병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법정에서 법정경찰관과 교도관의 계호권이 경합하게 되는데, 재판이 개정된 후에는 법정경찰관의 계호권이 우선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계호에 임하는 교도관은 미결수용자의 신병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아니 되므로 유사시에 대비한 직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 하여야 한다.

제4절 미결 수용 절차

1. 미결 수용 개시

미결수용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이나 명령에 의한 검사의 수용지휘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 미결수용실에 입소함으로써 개시된다.

따라서 구치소 등의 미결수용실이 있는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에 앞서 적법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행형법제8조1항).

이와같이 법관의 영장이나 검사의 수용지휘서 등의 적법서류를 미결수용시설에서 조사하는 이유는 수용자체가 신체의 자유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직접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는지 여부를 적법서류를 통해 확인함으로

써 부당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미결수용에 있어서 이러한 적법서류로는 구속영장, 수용지휘서,이송지휘서 등을 들 수 있다.

2. 미결수용자 분류수용

가. 분류 기준

미결수형의 주된 목적이 형사피의자·피고인 등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방지에 있으며, 이를 원활히 달성토록 하기 위해서는 수형자와는 격리 수용하여야 하고, 미결수용자간에도 적의하게 분류 수용하여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분류수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성년과 소년(만20세미만)을 구분 수용한다(행형법 제3조2항).

2)수형자와 격리 수용한다(행형법 제2조4항).

3)성별에 의하여 구분 수용한다(행형법 제4조).

4)초범자·만23세 미만자·입소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독거 수용한다(행형법 시행령 제24조).

5)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죄질·성격·범수·연령·경력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분 수용한다(행형법 제11조2항).

6)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부착하고 격리 수용한다(행형법 시행령 제171조1항).

나. 분류 지침[6]

---

6)법무부, 「교정예규(1982)」, PP.465-466; 권태정 "재소자 분류수용 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의 현실과 진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P.178-179.

미결수용자의 분류수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미결수용자 분류수용 지침은 다음과 같다.

1)기본분류(소송절차 및 처우상의 분류)

가)피의자와 피고인.

나)성년과 소년.

다)공범자.

라)만60세이상 고령자 등으로 구분 수용하되 피의자와 피고인, 성년과 소년은 가급적 사동별로 구분하여 수용할 것.

2)세 분류(형사 정책상의 분류)

가)죄명별 분류

①국가 보안법 위반자.

㉮ 무장간첩으로 활약하다가 체포되었거나 또는 살해행위에 가담한 흉악범 기타 주도적 임무에 해당한 거물급은 독거 수용할 것.

㉯ 비교적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용공분자(불고지죄 등)에 대하여는 일반사범과 혼거 수용하되 혼거될 자의 학력·경력·재산 및 가족관계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수용할 것.

②일반범.

㉮절도범.

㉯ 폭행 및 상해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상해 등).

㉰ 사기 및 횡령범(사기,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변조, 도박 등).

㉱과실범(실화, 과실치사상).

㉲기타 등으로 구분하되 ㉲항 기타에는 살인, 강도, 방화 등 흉

악범도 이에 포함 되므로 수용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질의 자를 수용하도록 할 것.

나)범수별 분류(초범·누범)

초범과 누범(범죄의 횟수기준)은 죄명별(공안사범 제외)로 거실을 구분 수용하되 피고인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 분류수용시 주의사항[7]

미결수용자를 분류 지침에 의하여 분류 수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항상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으므로 통모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더욱 철저히 구분 수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류수용은 물론 운동, 목욕, 접견, 출정, 치료 등의 경우에 상호 접촉을 엄금하여야 한다.

2)미결수용자중 교정시설에서의 규율을 부정하거나 불법한 권리주장을 선동 함으로써 다수에 의한 집단적 시위를 감행할 우려가 있는 특별수용자는 분류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중범자는 자포자기의 심리에 빠져 자살이나 도주 등을 기도할 위험이 다분하므로 격리 수용하고 업중히 감시하여야 한다.

4)미결소년수는 범죄성의 감염과 범죄방법의 습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18세미만과 18세이상을 분류수용 하도록 한다.

---

7) 정갑섭, 전게서, P.433.

3. 미결수용의 종료

가. 석방

석방은 미결수용시설에서 벗어나는 행위로서 미결수용자의 시설내처우의 종료를 뜻하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보석, 구속기간의 만료, 사면 등으로 석방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재판에 의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 등의 판결이 선고되면 미결수용자는 석방되므로 미결수용은 이로 인하여 종료된다.

나. 형의 확정

형의 확정은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서 시설내 처우를 받던것을 미결수용자로서 신분의 상실에 따라 수형자로 시설내 처우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미결수용중인 사형수의 경우는 사형의 집행이 바로 형 확정이 된다. 미결수용자가 사형이나 자유형의 확정으로 인하여 미결수용이 종료되며, 자유형이 확정된자는 검사의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나 구치지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고 교도소의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던 자는 기결사동으로 옮겨져 형의 집행이 개시된다.

제5절 미결수용 및 처우상 특례

우리나라 행형법 및 동시행령 제14장에는 미결수용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행형법 제62조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본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제46조2항7호의 접견·서신금지 중 변호인 또는 변호인

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접견·서신금지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는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미결수용의 본질상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행형법 및 동시행령 제14장에 별도의 규정을 분리하여 미결수용자의 수용 및 처우상의 특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관금지를 하고 있다(행형법 제63조).

㉯미결수용자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공범을 분리 수용하고 상호 접견을 금지시킨다(행형법 제64조 동시행령 제171조 1항).

㉰미결수용자의 공범과 수형자는 분리하여 이송토록 한다(행형법시행령 제171조 2항·3항).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도주 또는 체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계검사에게 통보한다(행형법시행령 제172조).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질병에 의한 위독과 사망시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계검사에게 통보한다(행형법시행령 제173조).

㉳미결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삭하지 못한다(행형법 제65조).

㉴미결수용자의 식량·의류·침구는 자변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급한다(행형법 제66조).

㉵미결수용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과 교회를 행할 수 있다(행형법 제67조). 단, 신청에 의한 작업시 구외작업은 못한다(행형법시행령 제174조).

㉶미결수용자는 외부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행형법시행령 제176조).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27조4항), 참정권이 보장된다.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행형법 시행령 제170조).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과 서신의 횟수 제한은 없다. 단 교정시설이나 직원의 여건상 1인 1일 1회로 소장이 허가하고 있다(행형법 제18조).

㉰미결수용자는 1인 1일 1종류의 국내 일간신문을 구독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는 저작이나 신앙고백·독후감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필을 할 수 있다.

제3장 미결수용자의 처우현황과 문제점

제1절 미결수용자의 수용 및 처우현황

미결수용자의 처우는 수형자와는 달리 도주 및 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의 규율유지가 그 기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이 1990년도에 53,169명이지만, 이중 46.6%에 해당하는 24,772명이 미결수용자이다.[1]

이제 미결수용자는 교정시설내에서 규율유지 차원의 수용관리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미결수용자의 교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시설내 교정처우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때 미결중에 출소하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미결수용중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교정교화의 효과가 지대하리라 사료된다. 다음에서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현황과 미결수용자의 처우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결수용자의 수용현황

가. 시설 현황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는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구치소와 구치지소가 있으며, 또한 교도소·소년교도소내의 미결수용실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이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행형법은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

---

1)법무부, 「법무연감 (1991)」, P.659.

다(행형법 제68조).

현재 전국에는 38개의 교정시설이 있으며, 미결수용자만을 전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로는 5개의 구치소와 1개소의 구치지소가 있을 뿐이다.[2]

나. 1일 평균수용인원

1990년도 1년간 전국 미결수용시설에 입소한 미결수용자는 총 116,272명이고, 출소한 인원은 총 113,800명이었다.[3]

1990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 미결수용자의 총 인원은 25,976명이나 연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4,772명이다. 1981년 이후 미결수용자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도표로 보면 < 표 3-1 >과 같다.

<표 3-1> 미결 1일 평균수용인원(1981년-1990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일 평균 수용인원	21,466	22,309	21,154	21,076	21,655	22,700	21,888	21,235	23,521	24,772
피의자	3,055	2,965	2,515	2,528	2,280	2,398	2,477	2,943	3,675	3,015
피고인	18,411	19,344	18,639	18,548	19,375	20,302	19,411	18,292	19,846	21,757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1)」, P.208.: 법무부, 「법무연감(1991)」, P.658.

다. 인구대비 미결수용인원

인구대비 미결수용인원은 < 표 3-2 >에서 보면 1989년부터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전재소자에 대한 미결수용자의 비율도 1984년이후 계속 증가

---

2)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1)」, P.207.
3)상게서, PP.236-237.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수형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미결수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 표 3-2 > 인구대비 미결수용인원(1981년-1990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인구 (증가비)	미결수용자 1일평균수용인원	미결수 비율	전재소자 1일 평균수용인원	재소자 비율	전재소자에 대한 미결비율
1981	38,722,529 (100%)	21,466 (100%)	0.06%	49,929 (100%)	0.13%	43%
1982	39,640,000 (102%)	22,309 (104%)	0.06%	54,586 (109%)	0.13%	40.9%
1983	40,264,820 (104%)	21,154 (99%)	0.05%	52,770 (106%)	0.13%	40.1%
1984	40,894,769 (106%)	21,076 (98%)	0.05%	51,506 (103%)	0.13%	40.9%
1985	41,208,877 (106%)	21,655 (101%)	0.05%	52,050 (104%)	0.13%	41.6%
1986	41,827,000 (108%)	22,700 (106%)	0.05%	54,010 (108%)	0.13%	42%
1987	42,082,128 (109%)	21,888 (102%)	0.05%	52,622 (105%)	0.13%	41.6%
1988	42,197,624 (109%)	21,235 (99%)	0.05%	50,569 (101%)	0.13%	42%
1989	42,586,410 (110%)	23,521 (110%)	0.06%	50,864 (102%)	0.12%	46.2%
1990	42,793,000 (111%)	24,772 (115%)	0.06%	53,169 (106%)	0.12%	46.6%

( )안은 1981년을 100%로 한 증가비를 나타낸다.

* 자료:법무 연수원, 「범죄백서(1991)」, P.210.; 법무부, 「법무연감(1991)」, P.659.

라. 미결수용자의 성별인원

< 표 3-3 >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매년도말 미결수용자의 성별 분포

여자 수용자의 구성비는 1981년에 6.0%이던 것이 한때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5년을 고비로 감소되어 1990년에는 5.5%를 나타냈다.

전체 미결수용인원에 있어서는 1981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1987년도에만 잠깐 줄어들었을 뿐 계속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 표 3-3 > 미결수용자 성별인원(1981년-1990년) (단위 : 명)

구분 \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소 계	19,862	19,850	19,111	20,080	22,264	21,943	19,528	20,138	23,504	25,976
남	18,680	18,622	17,853	18,691	20,602	20,473	18,436	19,113	22,401	24,542
여	1,182	1,228	1,258	1,389	1,662	1,470	1,092	1,025	1,103	1,434
여자비율 (%)	6.0	6.2	6.6	6.9	7.5	6.7	5.6	5.1	4.7	5.5

*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1)」, P.211: 법무부, 「법무연감(1991)」, P.659.

< 표 3-4 > 미결수용자 입소사유별 인원(1982년-1990년) (단위 : 명)

사유 \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계	104,932	99,103	98,987	97,938	101,984	97,746	103,141	107,213	116,272
신입소	104,919	99,083	98,967	97,933	101,983	97,706	103,135	107,202	116,262
보석취소등	13	20	20	5	1	2	5	11	10
기 타						38	1		
연도말인원	19,850	19,111	20,080	22,264	21,943	19,528	20,138	23,504	25,976

*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1)」, P.236: 법무부, 「법무연감(1991)」, P.663.

마. 미결수용자의 입소사유별 인원

미결수용자의 입소는 대부분 신입소에 의하나 간혹 보석취소나 기타 사유로 입소를 하기도 한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최근 10년간 100,000명 내외로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도 미결입소자 총수는 116,272명으로 전년도보다 9,059명이 증가하였다. 이를 <표3-4>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5 > 미결수용자 출소사유별 인원(1982년-1990년) (단위 : 명)

연도 / 사유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계	104,944	99,842	98,018	95,754	102,305	100,161	102,531	103,847	113,800
석 방	26,300	23,868	24,041	21,682	20,683	19,426	20,151	17,396	18,013
벌 금	2,662	2,203	2,654	2,562	2,666	2,736	2,937	2,987	2,732
집행유예	35,577	34,558	33,465	34,146	37,634	37,495	38,881	36,680	38,927
보 석	3,728	3,821	3,897	4,661	6,263	7,901	9,644	15,552	19,943
형확정	25,494	24,690	23,898	22,576	23,738	22,117	20,586	20,212	22,095
기 타	11,183	10,702	10,063	10,127	11,321	10.486	10,332	11,020	12,090

*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1)」, P.237; 법무부, 「법무연감(1991)」, P.663.

주: 1. 출소사유중 석방란은 구속취소(구약식기소, 불기소결정, 불구속재판 등),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선고,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석방임.

2. 출소사유중 벌금란은 법원의 벌금형선고로 인한 출소임.

3. 출소사유중 기타란은 소년부송치·구속집행정지·감정유치·선고유예·사형집행 등으로 인한 것임.

바. 미결수용자 출소사유별 인원

미결수용자의 출소는 석방, 벌금, 집행유예, 보석, 형확정, 기타로 구분

할 수 있다.

1981년에 101,789명이던 출소가 1990년에는 113,800명으로 평균 100,000명 내외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당국이 1년이하의 단기형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의 제도를 폭넓게 활용함에 기인하고 있다.[4] 이를 도표로 보면 <표 3-5 >와 같다.

사. 미결 외국인수용자 국적

< 표 3-6 >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미결 외국인 수용자의 국적별 분포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1981년이래 중화민국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인, 일본인 순이다.

< 표 3-6 > 미결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1981년-1990년) (단위 : 명)

연도 / 국적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중화민국	14	16	25	15	20	16	3	9	5	22
일 본	6	5	7	6	8	5	3	1	2	2
미 국	6	5	8	6	9	6	3	2	2	7
기 타	10	2	24	17	25	5	14	10	13	15
총 계	36	28	64	44	62	32	23	22	22	46

* 자료:법무 연수원, 「범죄백서(1991)」, P.213: 법무부, 「법무연감(1991)」, P.660.

2. 미결수용자의 처우현황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하

---

4)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1991)」, P.28.

여 구치소, 구치지소, 교도소·소년교도소의 미결수용실 또는 경찰관서 유치장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

미결수용자에게는 행형법 및 그에 근거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으나, 다만 도주의 방지(공판정에의 출석확보)와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신병을 구속받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위를 고려하여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자유의 제한은 구금 및 계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5]

둘째,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등 수용시설은 자유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교화 개선이라는 행형의 적극적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다만 구금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미결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의 방어권 존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6]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미결수용자의 처우현황을 시설내 처우와 수용자 권익보호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 시설내 처우

미결수용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미결수용실에 구금되어 생활을 하는자로서 주로 구금생활에 맞는 시설내 처우가 중점이 되고 있다.

---

5)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 규칙」 제84조2항에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이에 합당하게 처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법무부, 「행형의 과제와 실험(1989)」, P.56.

이에 미결수용자 시설내 처우로써 신입자 생활지도교육, 수용, 상담, 작업과 교회, 정서활동, 신문·잡지 및 도서열독, 집필 등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신입자 생활지도 교육

미결수용자 신입자 생활지도교육 근거로는 행형법 제62조에 의거 행형법 제32조 2항에 따라 신입자에게 생활지도교육을 실시 한다.

이는 모든 신입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소내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 및 규율 준수사항과 처우의 내용 등을 소개하여 구금에 대한 공포감과 초조감을 해소하고 자기성찰을 통한 명랑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2일간(12시간) 실시하는 생활지도교육이다.[7] 일반적으로 교육을 살펴본다면,

첫째, 과거의 비행을 반성시키는 것과 본인의 자각을 재촉하는 것이다.

둘째, 시설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체득시키는 것이다(규율훈련).

넷째, 갱생복귀의 마음자세와 생활설계 등의 시준을 주는 것이다.[8]

가) 신입자 생활지도 교과과목

신입자 생활지도교육 교과과목은 < 표 3-7 >과 같다.

나) 교육 방법

신입자 생활지도교육 강사는 7급이상의 간부직원이 되며, 각 과목별로 사전에 교안을 작성하고 VTR, 슬라이드, 챠트 등의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은 재소자 동작시간중에 실시하고, 피교육생은 수용거실을 별도로 지정하여 집결 수용함으로써

---

7)김화수, 「행형법학」, P.278.
8)이양배, "신입자 및 출소자 교육", 「교정」, (1988.10월호), P.78.

교육효과를 재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9]

< 표 3-7 > 신입자 생활지도 교과과목

과 목	교 육 내 용	비 고
생활 안내	소내생활·규율·접견·서신·출정 등.	과목별 교육시간은 각 기관 실정에 따라 적의 배정 시행.
접견및서신	접견실시 및 서신수발 등 절차와 유의사항.	
영 치	영치절차·차입·차하 범위 등.	
규 율	신입식 방지 등 재소자 준수사항.	
신문.도서	열독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의 료	진찰·투약·위생 등.	

* 자료:법무부, 「신입수형자 생활지도교육 지침(1978)」.

2) 수용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있어서 처우의 방법은 수형자와 달라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그들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독방구금을 시켜야 한다[10](행형법 시행령 제24조 4항).

물론 공범자 기타 사건관련자와는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행형법 제64조 동시행령 제171조 1항). 또한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내 수용에 있어서 수용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행형법 제63조).

3) 상담

미결수용자의 상담은 미결수용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고·감정 및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교화 활동이다.

---

9)김화수, 전게서, P.279.

10)일본 감옥법 시행규칙 제24조는 「형사 피고인은 가능한 한 독거 구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담은 수용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1:1의 관계로 이루어 지는 개별 상담이며, 미결수용 목적상 집단상담은 불가능하나 거실단위의 집단상담은 가능하다.

상담의 내용으로는 법률문제, 시설에의 적응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 신앙 및 양심적 갈등문제, 의료 및 정신과적치료, 작업(청원에 의한)문제, 앞으로의 생활대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상담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소장이하 간부직원이나 상담전문직원이 소관 업무별로 상담자가 되고, 종교상담, 전문적 지식 제공 및 정신적 치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외부전문인사(종교·교화위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11]

4) 작업과 교회

작업과 교회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67조에 미결수용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기 전에는 이를 강제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으며, 동법 시행령 제174조에는 신청에 의한 작업의 경우 구외작업에는 취업시키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또한 도주방지에 대한 배려다.

교회는 종교를 통해서 심성을 순화하고 도덕성을 함양시켜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미결수용자에게 종교귀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 종교에 귀의한 재소자들의 신앙 생활지도를 위하여 1,400여명의 종교인들이 종교위원으로 위촉되어 각 종교(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별 교리지도·신앙자매결연·종교의식 및 행사 등을 집전하며, 출소후의 신앙생활 유지를 위해서 온갖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12] 미결수용자의 신앙생활지도는

---

11)김길자, "교정시설내의 상담실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1987), PP.16-17.

12)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문제점(1992)」, P.73.

종교위원의 부족으로 활발히 전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최고수인 사형수와 무기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지도를 하고있다.

5) 여가 선용

엄격한 질서를 근본으로하는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미결수용자는 정서적 불안과 피동적인 생활이 되기쉽다. 따라서 부드럽고 명랑한 수용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오락 및 휴식시간에 장기·바둑·신문·잡지·도서열독과 방송청취를 통해서 정서순화활동은 물론 미결수용자의 교양 및 지식습득에 노력하고 있다. 신문·잡지·도서열독 등의 읽을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장되어야하며, 다만 구금 및 계호상 위험이 있는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판례로는 구금중의 피의자에 대하여 "읽을 자유, 알 자유가 다른경우이상으로 요구되므로 서적의 차입이 유치장의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일본의 하급심판례[13]가 있어 주목된다.[14]

법무부에서는 행형제도의 발전적 개선의 일환으로 1988년 11월 10일 신문·도서열독 범위의 확대로 수용자 처우를 향상시켰다. 종래 도서열독은 교화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열독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1인이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에 대한 제한은 폐지하였다.

또한 미결수용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주간 및 월간신문 준용)을 1인 1종류 1부씩 자변으로 구독하여 수용거실에서 열독할 수 있게 되었

---

13)동경고판, 「송무월보」, 13권 8호, (1968.4.28), P.916.
14)법무부, 「행형의 과제와 실험(1989)」, P.57.

다.[15]

6) 집필

1988년 11월 10일 법무부는 교화업무 개선지침을 일선 교정시설에 시달하면서 미결수형자의 도서검열의 완화, 신문 자변구입과 함께 순수한 작품활동, 종교활동과 관련된 신앙고백, 독후감등의 집필이 허가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시설내 처우향상은 물론 교정처우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나. 수용자 권익보호

미결수용자의 시설내에서의 교정처우도 폐쇄적인 격리기능 중심에서 교정의 사회화·민주화·개방화로 변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의식이 신장되어 행형분야에 있어서도 권익보호에 대한 요청이 강해지고 있다.[16]

미결수용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급여, 보건위생과 진료, 외부교통, 참정권 보장, 수용자 고충처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급여

미결수용자의 급여는 행형법 제66조 1항 2항에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는 그 구금의 성질상 "식량·의류 및 침구는 자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변이 불가능한 자는 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결수용자의 급여는 관급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수형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형자는 1일 3회 주·부식을 급여하며, 1인당 1일 총열량은 2500Kcal를 기준으로 하나 불취업자(이는 미결수용자와 동일함)는 1일1인당 660g

---

15)법무부, 「법무연감(1989)」, P.210.
16)남상철, "한국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향", 「교정」,(1991.6), P.33.

2222Kcal를 기준으로 한다.[17]

1992년 1일 급식비는 1256원(주식682원·부식524원·연료비50원)이다.

주식은 쌀과 보리만으로 혼합하여 지급하며 1989년부터 쌀과 보리의 혼합 비율은 60:40으로 하고 있다.[18] 또한 수형자의 의류나 침구 기준을 미결수용자에게도 준하고 있는바 그 기준은 < 표 3-8 >과 같다.

< 표 3-8 > 급여의류 등의 품목 및 수량.

구 분	품 명	단 위	1인당 지급기준	지급대상
실내의	동 복	착	2	전재소자
	춘추복	착	2	전재소자
	하 복	착	2	전재소자
내의류	런 닝	매	3	수형자
	팬 티	매	3	수형자
	동내의	착	1	수형자
	양 말	조	3	수형자
	조 끼	매	1	전재소자
침구류	솜이불	매	1/3	전재소자
	담 요	매	2	전재소자
	메트리스	매	1	전재소자
	겹이불	매	1/3	전재소자
	베 개	매	1	전재소자
신발류	고무신	족	1	전재소자

*급여식기등의 품목: 밥상, 밥통,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상용기구등의 품목: 책상, 침대, 비, 총채, 쓰레받이, 걸레, 휴지통, 식수그릇, 잡용수그릇, 세면기, 신장, 부채.

*기타일상용품: 휴지, 칫솔, 치약, 비누, 수건.

*자료: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1992)」, P.96.

---

17)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1991)」, P.67.
18) 법무부, 「법무연감(1990)」, P.171.

이중에서 수형자에게만 지급되는 품목도 자변이 불가능한 무의탁 미결 수용자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2) 보건위생과 진료

교정시설에 구금중인 수용자의 위생과 진료에 대한 처우로서 각 교정시설에는 의무관·간호원 및 기타 의료요원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있어서 수용자의 보건·검진·치료·질병예방·위생에 관한 제반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환자는 교정시설내의 의료진이 치료하고 있으나, 특수한 질병 또는 중병과 같이 시설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외부의 106개 개인 및 종합병원을 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치료하고 있다.[19]

미결수용자는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에 의거 외부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교정시설은 다수인원이 수용된 집단사회이므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므로 통풍과 채광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신체·의류·거실 및 기타 생활환경의 청결과 이발·목욕·면도·운동·예방접종 등 철저한 방역조치 및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3) 외부교통

미결수용자의 외부교통은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변호인과 비변호인의 교통이 있으며, 외부교통 수단으로는 접견과 서신이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교통권(접견·서류·물건의 접수)은 이들의 인권보장과 방어권의 보장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기도하거나 형죄법규에 저촉하거나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도주·기타 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외에는 변호

---

19)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P.69.

인과의 교통이 허용된다.

변호인과의 접견시간은 제한받지 않으며(행형법 제62조 동시행령 제54조), 접견의 일시, 장소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내와 접견실에 한정되나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집무시간외와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

비변호인과의 교통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제한의 내용은 접견금지, 서류·물건의 검열, 접수의 금지 또는 압수이다. 이때 피의자·피고인의 교통제한은 도주하거나 또는 죄적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피의자 모두 의류·양식 또는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준항고가 허용된다.[20]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은 매일 1회씩 제한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친족과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자는 모두 허용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토요일오후 또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하고 있다.[21]

그리고 서신도 매일 1회씩 친족은 물론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한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다.

4) 징벌 및 구제 제도

행형법에서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처분을 과한다고 규정하여, 경고로부터 7일이내에 감식에 이르기까지 9종류의 징벌을

---

20)법무부, 「행형의 과제와 실험」, PP.57-58.
21)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P.71.

정하고 있다.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규율사항과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벌의 기준(내용) 및 징벌절차에 관하여 법무부령인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1971.10.1 법무부령제176호) 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하고,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며 기타 교정시설내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형법 제14조, 제15조의 정하는 바에따라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승, 수갑, 연쇄, 방성구 등의 계구와 무기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수용자의 권리·이익을 보장하고 법적지위의 확립을 위해서 권리·이익의 침해에 대한 유효적절한 불복구제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는것은 교도소장 면담제도·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은 순열관에 대한 청원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행정 심판의 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형사처분을 구하는 고소,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22] 그리고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정기관장이 조사·처리토록하되 중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직접 조사·처리한다.[23]

---

22)법무부, 「행형의 과제와 실험」, PP.70-79.
23)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P.76.

제2절 미결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1950년 3월 2일 법률 제105호로 행형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제4차로 1980.12.22 법률 제3289호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은 1969년 10월 14일 대통령령 제4128호로 제정된후 제2차로 1981.5.20 대통령령 제103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므로서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해 촉진제적 역활을 해왔다.[20]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을 원활히 수행할때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교정처우도 효과적이며 또한 능률성이 제고 될 수 있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효율적인 관리와함께 수용시설내에서 수용기간동안 시설내 처우를 통한 효과적인 교정처우가 이룩되었을때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과 범죄인의 사회복귀후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미결수용자 처우의 문제점으로 교정시설, 수용, 시설내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징벌 및 권리구제, 교정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정시설의 문제점

가. 교정시설의 규모문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38개로 구치소 5개, 교도소 25개, 소년교도소 2개, 개방교도소 1개, 여자교도소 1개, 보호감호소 2개, 구치지소 1개, 교도소지소 1개가 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를 전문으로 수용하는 시설은 구치소 5개와 구치지소 1개뿐 이다.

---

24)김화수, 「행형법학」, PP.85-88.

우리의 교정시설 1일 평균수용인원이 1990년에 53,169명으로 1개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이 지소를 포함하여 1,399명으로 나타나 폐쇄시설내에서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이상적인 수용인원은 500명 이하여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이 사실이다.[25]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1990년에 1일 평균수용인원은 24,772명으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치않는 감호소 2개, 여자교도소 1개, 개방교도소1개, 천안소년교도소 1개, 청송교도소 1개, 소록도지소 1개를 제외한 31개 교정시설에 서 1개 시설당 평균 799명이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같이 교정시설의 규모가 적정범위(500명 이하)를 벗어나 대규모화하고 있어 미결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개별처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증거인멸 및 도주예방에 대한 수용관리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교정시설의 전문화 문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선진제국의 교정시설과 비교하여볼 때 획일적으로 설계되어 있다.[26] 미결구금자를 수용하고있는 구치소·교도소 등 모든 교정시설이 4.5m의 주벽을 외벽으로 하는 중구금시설의 구조로 되어있으며, 인적·물적계호 및 처우방법등이 동일한 것도 물론이다. (단 수원교도소는 주벽이 2.7m이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수형자와 완전분리하여 수용하여야하나 우리나라는 5개의 구치소와 1개의 구치지소 밖에 없다. 또한 그나마 38개의 검찰지청 가운데 교정시설이 있는 지청이 18개이고 나머지 20개의 검찰지청중 2개의 지

---

25)김종건, 「한국 교정행정 발전론」, (법문사,1987), P.138.
26)남상철, "한국 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향", PP.43-44.

청은 인근교정시설을 타 지청과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18개 지청은 대용감방 즉, 경찰관서 유치장을 미결수용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27]

이와같이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구치소,구치지소는 물론 교도소·소년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경찰관서의 유치장을 사용하는데에는 미결수용자의 본질적인 교정처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으므로 미결수용 교정시설의 전문화는 시급한 문제다. 또한 외국인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전문시설의 확대보급도 중요하다.

2. 미결수용자 수용의 문제점

가. 과밀수용의 문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평당 평균수용밀도를 보면, 1990년 현재 일반교도소가 1.8명,구치소가 2.3명으로 과밀수용하에 있다. 이렇게 과밀수용 되어있는 원인은 수용시설의 부족과 계호직원의 부족으로 사용하지 않는 수용거실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체 교정공무원대 재소자비율은 1990년 기준으로 1일 평균수용인원 53,169명에 대한 교정공무원 11,392명 일때 1:4.7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교정시설에 따라 교정공무원이 정원에서 항상 모자라고 있으며, 직접계호직원과 재소자의 비율로 볼때 그 비율이 1:8에 이르는 곳도 있는 사실은 과밀수용을 뒷받침하고 있다.[28]

---

27)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향」, P.122.
전국 경찰관서의 유치장(대용구치소)은 18개소로 경기 1개·강원2개·충북3개·충남2개·전북2개·전남1개·경북3개·경남4개이고, 실제수용거실 수는 176개인바, 1989년 한해에 612,051명이 이곳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치안본부, 「범죄분석(1989)」, P.27.참조)

28)김보환, "한국 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1991)」, P.45.

또한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1개 시설당 수용인원이 최대 3,200명에 달하고 있으며, 1000명 이하를 수용하는 시설이 불과 8개소에 불과함은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29]

특히 교정시설에서 거실내 처우를 받고있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독거실을 포함하여 평당 평균 2.3명이라는 숫자는 과밀수용의 극에 해당한다. 이는 현행 검찰의 구속위주 수사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 과밀수용에 원인이 된다.

나. 분류수용의 문제

분류수용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범죄인을 교화개선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있으며, 분류수용의 전제로서 수용자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그 인격을 보장하여야 한다.[30]

미결수용자는 교정시설을 통해서 구금확보와 증거인멸방지, 악풍감염방지, 도주방지, 범죄성향 상승효과 방지, 재범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미결수용자 분류지침에 의한 분류수용을 하여야 한다.

현재 분류수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미결수용인원의 과다와 교정시설의 부족 및 유사한 형태의 시설구조에서 미결수용자의 본질에 상응한 분류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수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3.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미결수용자의 시설내처우에 중요성은 교정처우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는

---

29)법무부, 「교정 수용통계 백년보Ⅱ(1988)」, PP.812-813.
30)권태정, "재소자 분류 수용제도의 개선방안", PP.207-208.

것 같다.

그러나 매년 10만 여명씩 미결수용자가 입소하고 10만 여명씩 출소하는 입장에서 볼때,[31] 미결수용자의 시설내 처우의 향상은 범죄자의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신입자 생활지도교육 문제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후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증거인멸 방지와 악풍감염예방에 따른 독거수용을 비롯하여 신입자 생활지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입자 생활지도교육이 2일에 걸쳐 12시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수용생활을 위한 안내로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32]

나. 상담의 문제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 또는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미결수용자의 상담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자의 부족 등 현 교정시설은 실질적인 처우향상을 위한 상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 시설의 문제

현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문제로서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의 부족과, 거실내 건조대 설치문제, 그리고

---

31)법무부, 「법무연감(1991)」, P.663.
32)김화수, 전게서, P.278.

거실내 도배에 따른 색채문화의 보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라. 여가시간 활용의 문제

미결수용자는 거의 거실내 생활이 수용생활의 전부를 이룬다. 이때 거실생활에 따른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내의 방송의 질적향상, 독서문화의 확대, 전통건전오락문화의 보급, 라디오의 개인소지 허용, 신문·잡지 등의 구독확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4. 인권 및 권익보호의 문제점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결수용상 제한되어야 할 것과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일정한 제한은 받는다.[33]

이런 제한에 대한 문제점으로 미결수용자의 인권 문제와 권익보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가. 인권 문제

미결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죄의 추정을 받고있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미결수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결수용기관으로 완전 독립된 기관이 5개구치소와 1개구치지소 밖에 없다는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의 흡연이 전면통제되고 있는 것도 인권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미결수용자의 인권향상을

---

33)정갑섭, 「교정학」, P.429.

위해서 제도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나. 권익보호 문제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받고있는 교정처우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처우(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이 인정되는 처우(헌법 제34조),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저한의 요소를 갖추어진 처우(헌법 제35조)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34]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미결수용자 자변문제와 의료제도 개선문제, 집필 및 필기도구 휴대문제, 외부 교통에 있어서 접견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미결수용자의 권익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5. 징벌 및 권리구제의 문제점

미결수용자의 수용시설내에서 규율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규율 및 질서유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자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의 수단으로 징벌처분(행형법 제46조 1항)을 규정하고 있다.

징벌에 대한 문제점과 징벌에 대한 권리구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징벌 문제

현행법상 징벌이라 함은 교정시설내에서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6조에 준거하여 제정된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

34)이돈희, "행형법의 제문제", P.11.

규칙 제3조(규율)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제재를 과하는 행형상의 불이익 처분을 말하고, 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리한후 결정한다.[35] 징벌의 종류는 9가지가 있으며, 징벌이 교정시설내의 질서유지와 규율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성격을 교정시키는데 그 제도적 가치가 있겠으나 수용자의 건강이나 기본권의 제한 또는 형사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으며, 혐의자가 징벌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할 수 있는 법적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징벌에 대한 문제점으로 징벌위원회의 구성이나, 징벌의 종류에 대한 처분내용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나. 권리구제의 문제

미결수용자의 권리구제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법상 권리구제의 방법으로는 순열공무원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제도(행형법 제6조)와 교도소장 면담제도(동법 시행령 제9조)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순열제도는 개별수용자의 권리구제보다는 법무부장관이 감독관청으로서 행형실태의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원제도 역시 그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교도소장 면담제도도 권리구제 수단으로서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있으므로 결국 미결수용자의 권리가 교정당국에 의해서 침해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따른다.[36]

---

35)김화수, 전게서, P.418.

36)신치재, "교정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전망", 「교정」, (1990.5), PP.21-22;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P.113.

6. 교정조직의 문제점

가. 교정기구의 문제

우리나라의 교정조직은 지휘명령 계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한 단순한 계선 조직으로만 되어있고 전문적으로 구성된 막료조직이 없어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채택할 수 없으며, 교정조직의 총수인 교정국장직을 교정전문인이 아닌 검사장이 맡고있다.

또한 교정조직의 중간감독기관이 91.11.1부터 서울·대전·대구·광주에 지방교정청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중앙단위 교정업무의 전담기구인 중앙교정청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고있다.

우리나라의 법무부 직제가 48.11.4 대통령령 제21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국은 6개과로 조직되어 지금까지 13차(대통령령 제13483호 91.9.30)에 걸친 직제개정으로 현행 교정행정의 중앙기구는 1국 1심의실 6개과로 개편되었다.

이는 또한 일선 교정시설인 4개 지방교정청과 38개 교정시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현황은 < 표 3-9 >.< 표 3-10 >과 같다.

이와같이 볼때 아직도 중앙교정청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구치소·교도소·보호감호소의 업무는 보안 제1과에서 통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교정청별로 시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않아 교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나. 교도관의 문제

미결수용자에 관한 교정처우는 수용시설을 통해서 도주방지, 증거인멸의 방지, 악풍감염의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시설내 처우를 통해 수용자

를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표 3-9 > 교정 중앙행정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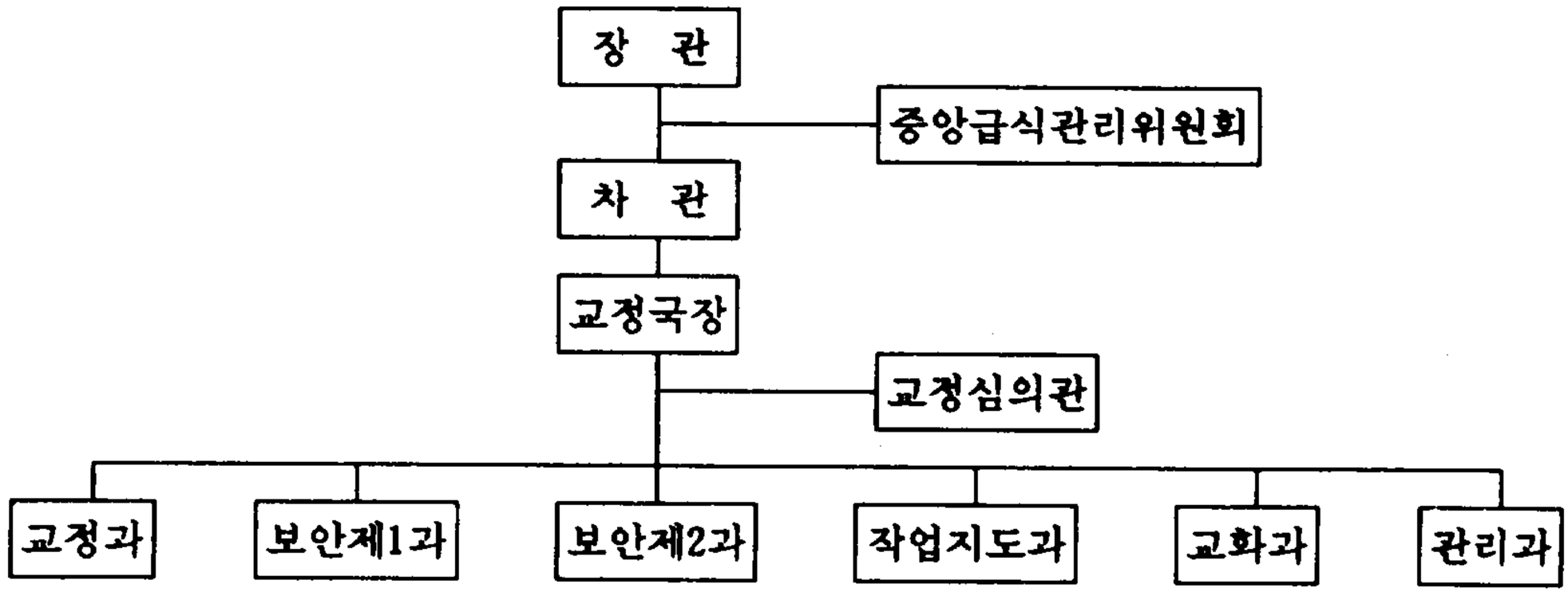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법무연감(1991)」, P.11; 법무부교정국, 「교정(1991.10)」, PP.102-103.

< 표 3-10 > 교정시설 현황 (1991.11.1 현재)

구분 / 지방교정청	구치소	구치지소	교도소	교도소 지소	개방 교도소	소년 교도소	여자 교도소	보호 감호소
서울 (11)	4		7					
대전 (8)		1	4		1	1	1	
대구 (11)	1		7			1		2
광주 (8)			7	1				
총계 (38)	5	1	25	1	1	2	1	2

* 자료: 법무부, 「법무연감(1991)」, P.709; 법무부교정국, 「교정(1991.10)」, P.114.

이에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련된 교도관의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교도관의 자질이나 전문인력 또는 교도관의 처우와 미결수용자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1). 교도관 자질향상의 문제점

교정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미결수용자의 수용관리에 따른 인권 및 권익보호와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행형사조가 교육형주의로 일대 전환을 이룩한 이상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교정공무원의 자질향상은 시급한 일이다.

교정공무원의 자질은 우수인력 확보, 교육훈련, 교도관 철학의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가). 우수인력 확보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 학력수준은 대학원졸 0.4%, 대졸 12.9%, 초대졸 6.5%, 고졸 71%, 중졸이하 9.2%로 비교적 낮다.[37] 일본은 1986년도 교정직원의 학력수준이 대졸 31.6%, 단기대졸 5.9%, 고졸 53.2%, 중졸 9.3% 이며,[38] 미국은 미연방교정국의 경우 교도관이 되려면 3년간 타인을 감독 또는 지도한 경험이 있거나, 성인을 교육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 교정 또는 갱생보호의 경험이 있거나 사회사업 기관에서 카운셀링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광범한 대인관계, 판매경험 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미국의 신임교도관의 1/3이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약 70%가 대학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9]

---

37)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P.107.
38)송주섭, "일본교정의 조직과 운영상황", 「교정」, (1988.5), P.101.
39)신성섭, "한국 교정행정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P.83.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우수인력 확보는 미결수용자의 교정처우와 재범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면에서나 형사정책적인 면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 교육 훈련

교정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없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임교도관 9급의 교육은 4주간밖에 되지 않는데 동 교육기간중 행형학 등 27개 과목을 114시간에 이수하고 있으니 이들이 일선 교정현장 근무에 즉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각 기관단위로 이들에게 자체교육을 이수시킨 후에 현장근무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정간부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7급 교정간부 후보생교육이 6개월(24주)과정으로 행형학 등 방대한 과목을 이수하고 있어 자연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실정이라 엘리트 초급교정 간부를 양성한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40]

다). 교도관 철학의 확립

국가공무원으로서 교도관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자질문제로서 교도관의 철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교도관은 범죄자를 바로잡고 인도할 수 있는 관리로서, 1961.12.23 법률 제858호에 의거 형무소·형무관에서 교도소·교도관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교도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41] 교도관이면 교도관다운 확고한 철학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교정의 현실상 누가 교도관이고, 누가 간수(수용자를 보살피고 지키는 일)인지 업무구분이 안되고

---

40)남상철, "한국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향", 「한국교정학회(1991)」, P.15.

41)김화수, 「행형법학」, PP.82-83.

있으며, 실상 간수의 역활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교도관은 교도관으로서 교정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성직자나 교육자적 자세로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고 재범방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확고한 철학의 확립이 시급한 문제이다.

2). 교도관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

교정행정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각 분야별로 전문화 되어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시설내 교정처우를 위해서는 전문상담요원이나 전문의무요원 등 전문인력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 정원이 1990년도말 기준으로 11,392명으로 이중 89.3%에 해당하는 10,175명이 정복교도관이고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교회직, 분류심사직, 직업훈련직, 의료직 등은 677명으로 6%를 차지하고 나머지 540명 4.7%는 기능직으로 분포되어있다.[42] 이는 이웃 일본의 7.6%(1984), 미연방교정국의 43%(1988)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43] 또한 교정공무원 정원 11,392명에서 부족인원이 806명으로 7%나 된다.[44]

이는 교정공무원 이직률 연간 5.2%와 함께 항상 부족한 인원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5]

교정공무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체제의 정복교도관도 전문화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계호직과 교정직으로 구분을 하던가 또는 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별로 직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

---

42)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P.41;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P.23.
43)정갑섭, 「교정학」, P.447.
44)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상게서.
45)남상철, "한국 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향", P.3.

다.

3). 교도관 처우의 문제

우리나라의 교정직공무원의 이직율은 연평균 5.2%로서 일반행정직의 3%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6] 이렇게 교도관의 이직율이 높은 것은 교정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교도관으로서 직업의식이 희박한데 그 원인이 있다.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의 처우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찌기 영국의 행형위원장이었던 피터슨이 "아무리 교정직원에게 물질적 대우를 잘해 주어도 근무시간 및 범죄자와 접촉하는 불쾌감 등 두가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파한 것은 교정직원의 근무여건을 잘 대변해 준 것이라 하겠다.[47] 또한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 복역중이었던 김남주 시인은 "우리들의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교도관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1988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말한 것에서 보듯이 수용자의 인권과 교도관들의 인권은 상관관계가 깊다.[48]

이와같이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와 교도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교도관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근무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

46)남상철, "한국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향", PP.3-4.

47)신성섭, 전게논문, P.86; 長谷川永, "매력있는 직장", 「행정」, 81권 1호(동경:1970), P.77.

48)「평화신문」, "양심수들 정치보복 깔린 차별에 이중고통", 1988.11.6-12자 기사; 유남영, "현행 행형법 개정의 기본적 방향", 「법조춘추」, 137권, (1989), P.82.

둘째,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셋째, 교도관의 복지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직의 승진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제4장 미결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원인은 범죄의 발생으로부터 범죄혐의자로 지목되어 유·무죄의 여부를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의 도주방지 및 증거인멸의 방지에 있다.

1990년도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1,171,380건으로 1989년의 1,073,997건에 비하여 약 9%나 증가 하고 있다.[1]이 중에서 1990년도에 교정시설에 입소한 인원이 116,272명이나 되며,또한 당해년도 미결수용자로서 출소한 인원이 113,800명에 이르고 있다.[2]

최근 많은 범죄가 전과자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범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누범에 있음을 볼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

이와같이 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화 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있는 교정당국에서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미결수용자의 수용단계에서 부터 출소할때 까지 보다 더 적극적인 교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내 입소에서부터 효과적인 시설내처우를 통한 교정처우가 이루어질때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결수용자 처우의 개선방안을 교정시설, 수용, 시설내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징벌 및 권리구제, 교정조직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대검찰청, 「범죄통계」, 1991년 참조: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P.116.
2)법무부, 「법무연감(1991)」, P.663.
3)김보환, "한국 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26.

제1절 교정시설의 개선방안

1.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1990년말 현재 지소를 포함해서 38개이며 1개시설당 평균 수용인원 1399명을 수용하고 있다. 흔히 수용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이상적인 1개 시설당 수용인원은 500명 이하로 보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까마득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결수용기관은 5개구치소와 1개구치지소가 있으며, 나머지 미결수용자는 교도소·소년교도소의 미결수용실이나 경찰관서 유치장(대용구치소)에 수용되고 있다.

미결 전문수용시설인 5개의 구치소도 대규모 시설로서 1,000명 이상씩 수용하고 있다. 앞으로 교정시설을 증설 할 때는 각 교도소·소년교도소에 있는 미결수용시설을 인근에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 주변에 구치지소를 설치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교정의 사각지대인 경찰관서 유치장(대용 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를 구치지소에 수용하여 교정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미결수용 전문시설인 구치지소를 법원이나 검찰청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아울러 소송업무의 수행에도 원활을 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

그러나 최근 교정국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법원 및 검찰청에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와같이 구치지소의 설치가 각 검찰지청마다 이루어질 때에는 미결수용

---

4)남상철, "한국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향", P.23.

인원의 분산과 함께 소규모 교정시설로 수용인원의 감소에 따른 미결수용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범죄 혐의자를 기소이후에 수용토록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일본은 1976년 이후 교정시설의 1일 평균수용인원이 50,000명 선으로 교정시설이 총191개소이며, 그 중 구치소 7개와 구치지소 108개로 구치시설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5]

2. 교정시설의 전문화

교정시설의 전문화는 곧 처우의 전문화를 가능케 한다. 우리나라 처럼 획일적인 교정시설은 이제 지향되어야 한다. 먼저 구치소·교도소·보호감호소가 각자 기능에 따라서 전문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구치소의 전문시설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도주예방은 물론 증거인멸의 방지, 악풍감염의 방지 등을 위해서 미결수용자 분류 수용지침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구치소나 구치지소를 전문화해야 한다.

선진제국에서의 구치시설은 독립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서 법원이나 검찰청 인근 도심지의 좁은 부지위에 외관상으로 일반 사회건물과 동일하게 수용규모에 걸맞는 아담한건물 내지는 고층빌딩화 하고 있다.

교도소내에 기·미결수가 병존하게 되면 신분상 상이한 교정처우가 불가피한 경우 처우상의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마저 상존하게되며, 교도소의 경우 방대한 부지 확보와 신축비의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대부분 도심지의 외곽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출정 계호상의 문제라든지 법원이나 검찰의 재판 및

---

5)강대성, "최근의 일본교정 통계", 「교정」, (1991년 6월호), P.116.

수사 소환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치소의 경우도 기존 교도소와 동일한 시설을 하고있는 것도 미결수용자 처우에 부적합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구치시설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현재 수원구치소와 울산구치소를 각각 지상9층 및 5층의 고층시설로 신축중에 있으며, 대구·인천구치소도 곧 고층시설로 신축할 계획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구치시설을 고층화하는 이유는 우선 법원이나 검찰청 주변인 도심지에 위치할 수 있으며, 기존 교도소와 다른 미결수용자의 신분에 상응한 교정처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국 뉴욕의 도심지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는 12층 건물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타 등의 현대식 구치시설이나, 일본의 나고야구치소와 같이 지상12층 지하 3층의 최신 고층 구치시설을 나고야시 중심가에 신축하여 개청한 것을 들 수 있다.[6]

3. 구치시설의 개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교도소나 구치소의 건물설계가 너무나 흡사한 실정이다.

이는 각자 특성에 맞는 교정처우에 부적합하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일자형 주복도에 독거방과 혼거방으로 12개에서 15개정도 나열되어 있다.

우리도 이제는 획일적인 교정시설에서 탈피하여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알맞는 구치시설로서 영국의 철학자 벤담(J.Bentham)이 고안한 파노프치콘(모

---

6)남상철, "한국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안", PP.22-23.

든것을 본다)같은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한사람의 감시자가 중앙의 감시대에서 사방의 전체는 물론 각 거실의 내부까지 살필 수 있는 원형 독거방의 구조로서 미국과 세계각국의 행형건축에 큰 영향을 끼친바 있다.[7] (그림 4-1참조)

< 그림 4-1 > 벤담의 파노프치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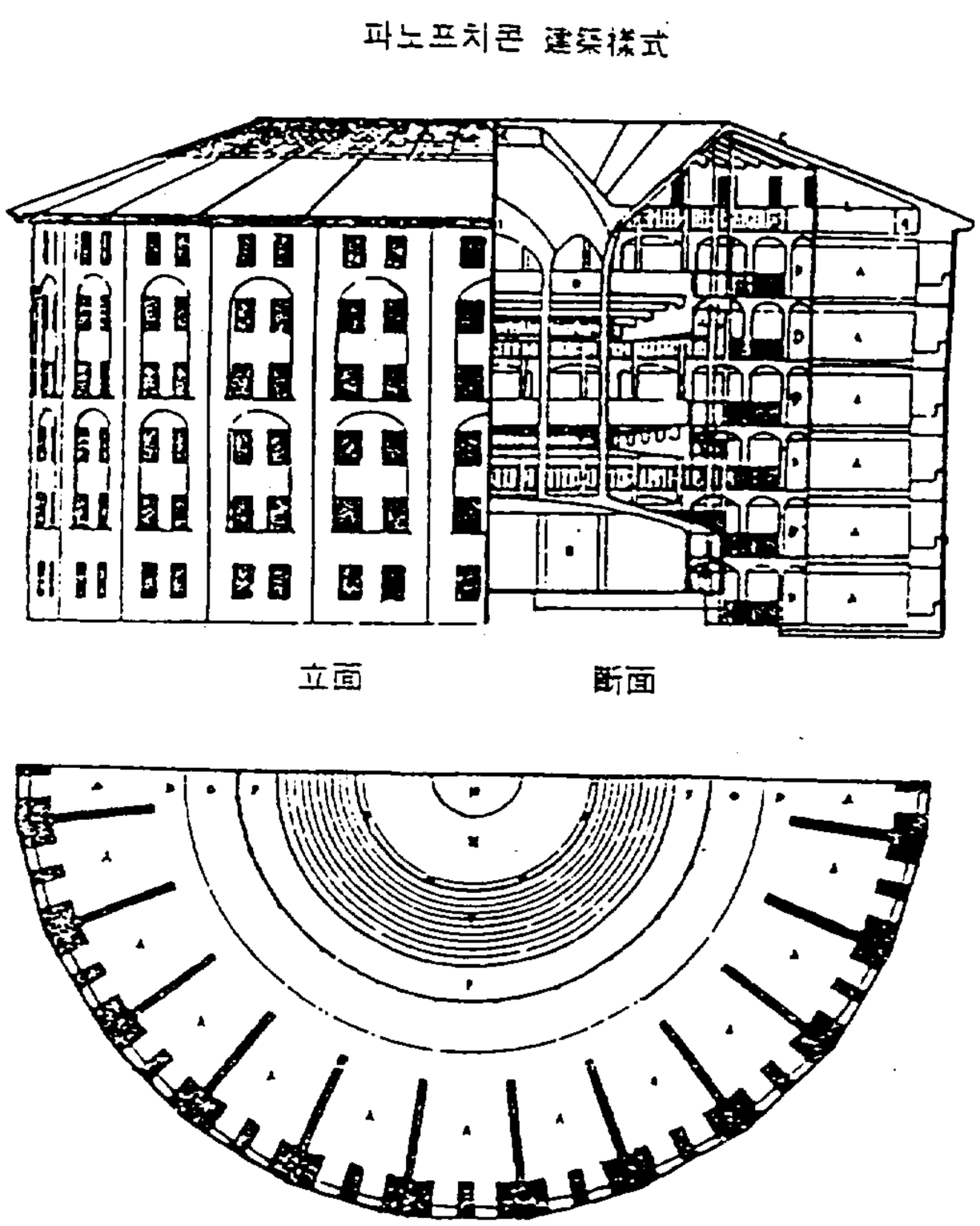

*자료 : 정갑섭, 「교정학」, P.169.

---

7)정갑섭, 전게서, PP.168-169.

이와같이 벤담의 파노프치콘 시설 상·하층을 강당이나 극장같이 설계하여 하나의 사동으로서 1인의 담당이 관리토록하며, 4층단위 1개 건물로 신축하여 담당 2인과 상담근무자 1인이 함께 근무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를 설치하여(아파트나 연립주택 베란다와 같은 시설로 뒤에는 철장으로 차단한다) 거실전용 건조대와 화분등을 설치하여 정서적인 분위기를 살릴수 있도록 한다.

거실내에는 개인침구 및 옷·신발·세면도구·기타 개인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 개문형 개인사물함이 거실수용 최대인원만큼 설치해 주어야 한다(그림4-2참조).

이는 수용자에게 수용생활에서 질서 및 규율확립에 따른 책임의식과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 및 준법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구치시설에서 주복도쪽에 창문과 출입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장으로 설치하여 수용생활을 담당근무자가 살펴 볼 수 있게 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원형 사동은 1대의 감시 카메라로 상·하층 1개 사동을 볼 수 있는 잇점도 있다.

구치시설이 고층건물화 했을때는 주벽이나 감시대가 필요없겠으나, 기존 시설의 교정시설에도 이제는 교도소를 상징하는 감시대(망루)를 제거하고 각 주벽에 감시카메라와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여 인적계호에서 물적계호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구비할때 1·2층을 1인, 3·4층을 1인이 근무토록 하고 상담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교회사 1명을 고정 배치토록 한다.

야간에는 각층별로 감시 카메라를 작동하여 1-4층까지 2개사동을 1인의

근무자가 근무토록 한다.

<그림 4-2> 구치시설의 거실 개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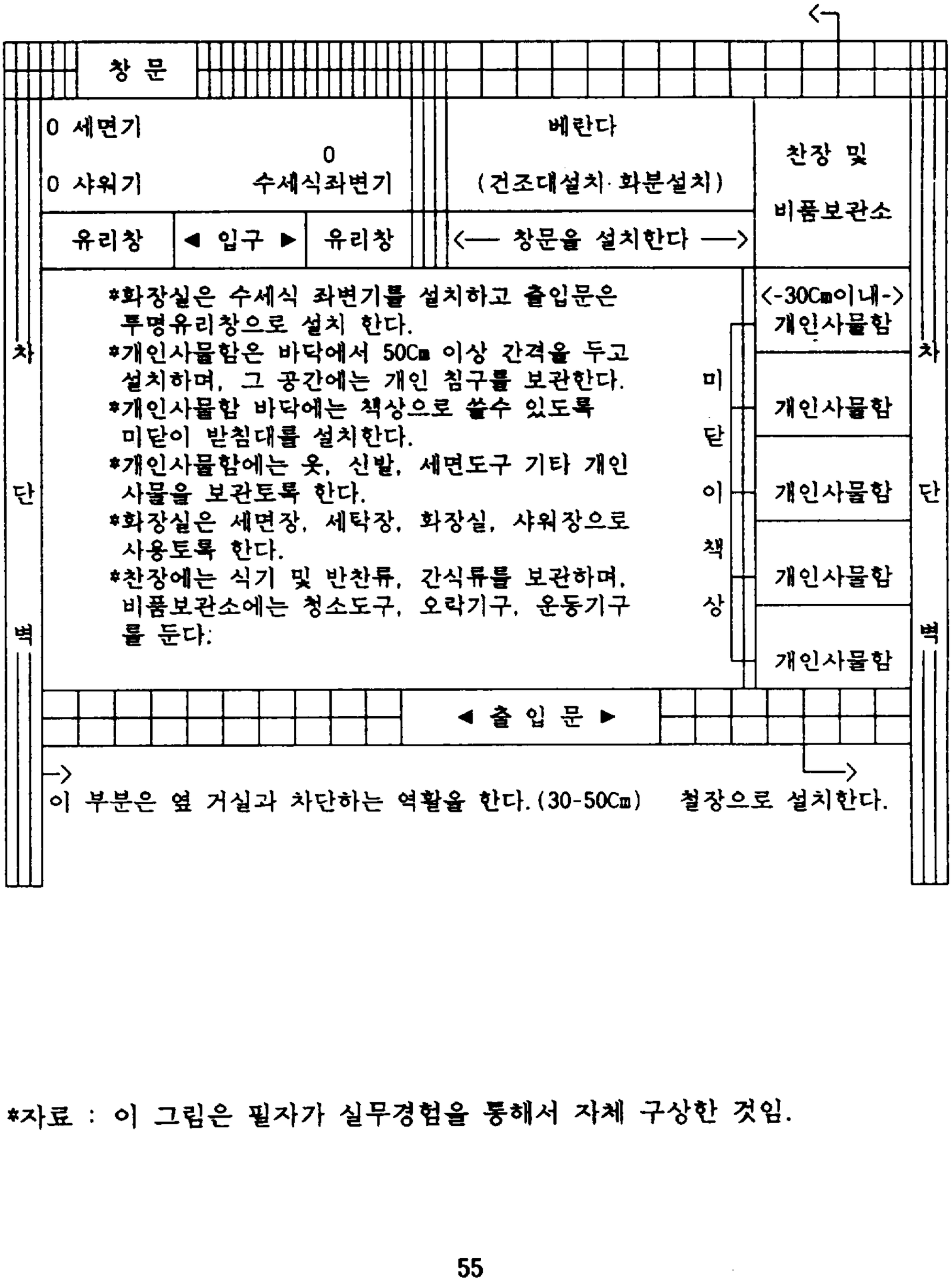

*자료 : 이 그림은 필자가 실무경험을 통해서 자체 구상한 것임.

제2절 미결수용자 수용의 개선방안

1. 과밀수용의 해소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수용밀도는 구치소의 경우 독거실을 포함해서 1990년도 평당 2.3명으로 심각한 현상이다. 특히 구치소나 구치지소의 부족으로 아직도 대용구치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은 18개나 되고 있다.[8]

이는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이나 교정처우에 소홀한점이 많으며 구치지소의 증설과 함께 수용밀도의 적정선의 유지가 미결수용자의 증거인멸방지나 수용시설에서의 악풍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결수용자 과밀수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 검찰이나 법원주변에 소규모 구치시설을 전문화하여 대대적인 증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밀수용의 원인으로서 현재 교정시설에 인력이 부족하여 미사용하는 거실이 있듯이 교도관의 증원 또한 시급한 문제이나 작은 인력으로 많은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수용관리할 수 있는 구치시설의 증설로 대인계호에서 대물계호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속율을 보면 전술한 바와같이 1990년도 범죄 발생건수가 1,171,380건이며 이중 교정시설 미결입소자가 116,272명으로 10%정도 구속

---

8)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1992)」, P.122;
치안본부, 「범죄분석(1989)」, P.27.

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도 미결수용자 출소인원 113,800명을 볼때 구속취소·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의 선고, 구속기간만료 등의 석방이 18,013명이고, 벌금이 2,732명, 집행유예가 38,927명, 보석이 19,943명이나 된다(표 3-5참조).

이와같이 미결수용중 출소할 수 있는 인원을 검찰에서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 하거나 기소후 법원의 보석 결정에 의한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한다면 미결수용자의 과밀수용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것이며 수용자의 악풍감염 우려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는 교정시설내에서 미결수용자 수용관리는 물론 보다 더 효과적인 교정처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결수용자 과밀수용해소는 1개 거실당 수용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독거 또는 5인이내) 수용자의 악풍감염을 방지하고 과밀수용으로 발생하는 교정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2. 분류수용의 개선

미결수용자의 분류수용은 격리구금단계에서 공범간의 증거인멸방지와 도주모의방지, 악풍감염 예방, 등 교정처우에 매우 중요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수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치소나 구치지소의 증설로 미결수용자의 전문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교도소·소년교도소에 있는 미결수용실이나 경찰관서 유치장(대용구치소)에 수용되어있는 미결수용자는 미결전문수용시설에 수용해야 한다. 또한 수용 밀도도 최대한 낮추어서 독거 또는 5인이내로 하여야 한다.

둘째, 미결수용자의 분류수용을 위한 분류수용 전문직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결수용자가 신입소 될때 즉시 수용상분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 분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범간의 증거인멸방지나 악풍감염예방에 효과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즉시 분류수용을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고정 배치되어서 효과적인 분류수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분류수용에 대한 중요성을 교도관 및 수용자에 인식시켜 원활한 분류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9]

셋째, 미결수용을 전문으로하는 구치소는 전문화를 기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수용하되 시설별로 하여야 한다. 특히 피의자의 수용은 기소이전의 단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교정시설에 피의자 입소를 지양하고 기소 이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미결수용자는 분류지침에 외하여 수용토록 하되, 초범과 재범의 분류수용은 피의자부터 반드시 구분수용 하여야 한다.

분류지침은 초범과 누범은 죄명별로 거실을 구분수용하되 피고인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악풍감염방지나 수용질서확립에 필요한 시기는 입소후 피의자 신분일때 부터 구분 수용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기소이후 수용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기소이전에 수용될 때는 공범분리는 물론 누범자에 의한 악풍감염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피의자를 구분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미결수용자 시설수용에 있어서 독거수용이 최상의 방법이나, 시설이나 교도관의 부족으로 혼거수용을 하고 있다.

---

9)권태정, "재소자 분류수용 제도의 개선방안", P.209.

미결수용 분류지침에 없는 사항중에 연령별, 학력별, 종교별, 지역별(지역감정 분위기가 교정시설안에 있는 수용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구분수용은 교정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별 분류수용은 조직폭력배 등 흉악범에 한해서 국한시키도록 하되, 이들의 종교적 수용은 배제한다.

< 표 4-1 >과 같이 절도범을 세분해서 수용하는데 24개의 거실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5개죄명별로 구분수용할때 120개의 거실이 필요하며 1개 거실당 3-5명정도 수용 한다면 360-600명 수용이 가능하다.

< 표 4-1 > 미결수용자 분류수용 현황(피고인)[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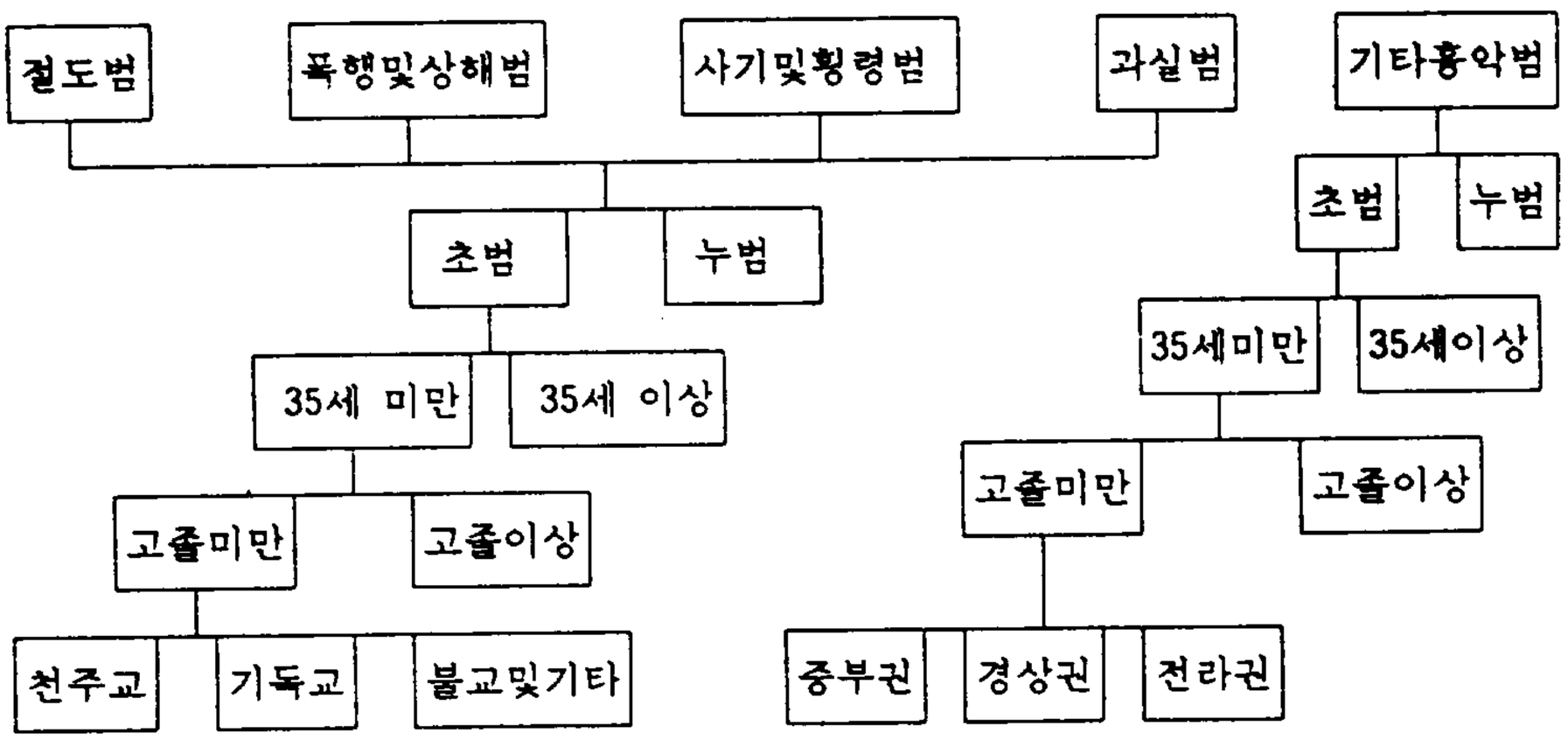

또한 공안사범은 독거 또는 혼거수용을 하되 학력과 연령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확정된 미결수용자는 이송전까지 별도의 사동에 혼합수용토록 한다.

그리고 미결수중에서 1심 또는 2심에서 재판이 끝나고 난후 확정되기 전

---

10)이 도표는 필자의 실무경험을 통해서 자체 구상한 것임.

까지의 기간은 미결수용자이지만 실제는 기결수나 마찬가지로서 별도의 거실에 혼합수용을 하는것이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렇게 미결수용자를 엄중분리 수용한다면 1개 구치소나 구치지소에 150개정도의 수용거실만 확보한다면 효과적인 분류수용이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약물오염수용자, 강력범수용자, 불구자, 노약자, 환자의 분류수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이 현재 미결과 기결의 구분도 잘 안되고 있는데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분수용이 시설별로 이루어 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의자 수용시 반드시 초범과 누범의 구분수용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범죄혐의자를 검찰이 기소후 교정시설에 수용시키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더욱 바람직 하겠다.

제3절 미결수용자 시설내 처우의 개선방안

현대 행형에 있어서 미결수용자는 무죄를 추정받고 있으므로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도주·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사회로부터 격리구금차원과 교정시설의 보안과 규율유지에 따른 수용관리가 중점적이었고 적극적인 교정처우로서는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도를 기준으로 미결수용자의 현황을 볼때, 전년도 이월인원이 23,504명 이고 1990년도 신입소 인원이 116,272명으로 도합 139,776명이다.

이중에서 미결상태에서 출소한자가 1990년도에 91,705명이고 형이 확정된자가 22,095명이며 나머지는 1990년도말 미결 잔여 인원으로 25,976명이다.

이렇게 미결수형자 총수에서 65%에 해당하는 91,705명이나 되는 자가 특별한 교정처우없이 사회로 재 복귀되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990년도말 수형자 29,013명중 초범자가 10,120명이지만 누범자가 18,893명으로 전체수형자의 65%이며, 이중 재범자는 7,261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25%이고 누범수형자의 38.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11] 미결수용자의 시설내처우를 통한 인격수양·정신개조·준법정신·건전한시민상 등을 확립하여 사회로 복귀시킬때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결수용자의 시설내 교정처우를 위해서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신입자 생활지도교육, 상담, 시설, 여가시간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이때 미결수용자에게 시설내 교정처우를 통해서 수용자 스스로 반성하고 갱생 의지와 신념을 갖도록 강제성이 전혀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교도소에서 수형자에게 강제노역을 통한 갱생보다 더 어렵고 힘들지라도 더욱 더 보람차고 효과있는 일이라 하겠다.

1. 신입자 생활지도 교육의 개선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여 가장 먼저 증거인멸방지와 악풍감염방지에 따른 독거수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정에서 여의치 못할 때에는 최소한 공범분리 및 죄명에 따른 초범과 누범의 분류수용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일단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신입자 생활지도교육을 통해서 수

---

11)법무부, 「법무연감(1991)」, P.663.

용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 및 규율준수사항과 처우의 내용등을 인지하여 구금에 대한 공포감과 초조감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입자 생활지도교육은 우선적으로 신입자의 독거수용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교육기간은 2일간 12시간에 한정되고 있다.[12]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신입자 생활지도교육을 1-2주간 입소시 조사와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13] 우리나라와 달리 미결수용자는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형무소로 이송된다. 신입자는 보통 오전 10시경에 경찰로부터 호송되어오므로 신입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휴대품 및 신체검사를 철저히하여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14]

이와같이 우리나라도 검사기소후 주간입소가 이루어진다면 바람직 하겠으나 현재 기소전 단계에서 구속영장발부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있으므로 이의 분류수용은 물론 신입자 생활지도교육을 기소전까지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신입자 생활지도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입자 전용 독거시설을 마련하고, 전용교육시설을 구비하며,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전용 강사진, 교안 등을 작성하여 기소전 까지는 반복교육을 시켜야 한다. 기소후에는 수용자 죄질에 따라 미결수용자 분류지침에 의거 혼거수용토록 하여야 한다.

미결수용자 신입자 생활지도교육의 성과에 따라 수용생활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 교정시설별로 교안이나

---

12)김화수, 전게서, P.278.
13)법무부, 「외국의 교정제도(교정공무원 해외시찰보고 1990)」, P.42.
14)박송주, "일본 교정제도 및 시설의 연수보고서", 「교정」, (1991.9), P.123.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보다는 각 지방교정청에서 일괄 제작하여 각 교정시설에서 시행토록 한다.

2. 상담문제의 개선

미결수용자의 입장에서 볼때 교정시설에 구금되면서 자기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또한 구금생활에서 오는 갈등현상으로 시설에의 적응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 신앙 및 양심문제, 의료 및 정신적 치료문제, 작업(청원에 의한)문제, 앞으로의 생활대책문제 등을 가지고 수용자와 상담자가 1:1로 만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용자개인의 사고·감정 및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중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있는 교회직 공무원의 숫자가 수형자에 비하면 1:100정도로서 미국의 1:51정도에 비하면 실질적인 상담에 별로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 이들 교회직 공무원은 현재 각 대학에서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행정학, 등을 전공한 졸업생중에서 채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 개개인의 자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5]

교회직 공무원을 외부로부터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으나, 교정직공무원중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3-5년이상 현장근무 경험있는 교도관을 교회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 이들은 현장경험이 있어서 재소자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대학졸업의 학력으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하위직(8,9급)공무원중 우수인력의 이직을 방지할 수

---

15)남상철, "한국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향", P.29.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교도관의 향학열을 불러 일으키면서 전체 교도관의 자질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교회직공무원도 각분야별로 전문상담요원이 확보되어야 한다.즉 법률적 조언을 하는 법무상담관, 생활지도하는 생활지도상담관, 심리치료하는 의무상담관, 등으로 전문화하여 효과적인 교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상담관들은 미결수용시설에 고정배치하여 법률적조언, 생활지도, 심리치료, 상담 등을 통해서 방어권행사, 수용시설에 적응력 향상, 인격적성장의 촉진, 행동권리의 옹호, 환경적조성을 위해 노력할때, 시설내 교정처우는 향상된다.[16]

3. 시설문제의 개선

교정행정이 복수적 응보형사상에서 교육적 개선형사상으로 수용자를 교화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킴이 교정의 궁극적 목적으로 인식되었으며, 교정시설의 구조도 개선되기에 이르었다.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수용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구금확보에 지장이 없고, 사회와 격리수용이 가능하며, 감시 및 시찰이 편리하고, 공동생활에 불편이 없고 위생적이며, 계호 및 업무수행상 편리해야 한다.[17]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시설내 처우를 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기. 운동

---

16)김길자, "교정시설내의 상담실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21-22.
17)정갑섭, 「교정학」, PP.167-171.

미결수용자는 접견, 출정, 운동을 제외하고는 거실내 생활을 한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의 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에게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하여야 한다"(행형법 제24조). "수용자는 매일 1시간 이내 구내운동을 실시하되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또한 독거 수용자에 대하여는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행형법 시행령 제96조)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운동장의 부족과 계호직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독거수용자는 1시간, 혼거수용자는 30분간 매일 실시하고 있다(법무부훈령 제239호 1990.5.1 개정·계호근무수칙). 또한 미결수용자 운동을 위한 실내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우천일에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결수용자의 운동은 건강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했듯이 정신수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수용사동별로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실내운동 시설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교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환자나 고령자는 운동시간을 증가 시켜야 한다.

나. 거실

거실은 미결수용자가 접견, 출정, 운동 등으로 출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수용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60조 1항은 「시설의 관리제도는 수형자의 책임관념을 박약케 하거나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경심을 감소 시킬만한 어떠한 수용생활과 자유생활간의 여하한 차이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8]라고 규정하였듯이 미결수

---

18)정갑섭, 전게서, PP.473-474.

용자 거실은 최소한 <그림4-2>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수용시설은 아파트나 연립과 같이 베란다가 없으므로 수용자의 세탁물을 실내에서 건조 할 수 밖에 없다. 이때 거실내 수용자의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명랑한 수용질서와 규율이 문란해 질 우려가 있다.[19]

또한 베란다에 화분 등을 설치하여 정서순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실내 분위기 조성과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도배나 채색을 하되, 이는 과학적·심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수용시설내의 거실에 채색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활속에서 건강·질병 및 행복은 색채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색채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며 사람의 취향이나 기질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20]

마리아 리커즈 옵상키나(Maria Rickers ovsiankina)박사가 언급했드시 젠쉬(E.R. Jaensch)는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색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따뜻한 색쪽과 차가운색쪽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차가운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초연한 태도를 보이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도 못한다. 또 정서적으로도 냉정하며 마음을 잘 터놓지 않으며 주관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며 내향적으로 통합된 유형이다.[21]

차거운 색으로는 파랑, 감청, 남색 등 단파장쪽의 색이며 소극적이고 조

---

19)불쾌지수는 생활상 불쾌감을 느끼는 수치를 표시한 것으로 미국에서 만들어 졌다. 이는 (건구의 C+습구의 눈금+습구의 눈금 C)*0.72+40.6=불쾌지수로 표시한다. 이것이 70이상에서는 반수가 불쾌감을 느끼고, 80이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며, 86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 (한국교육출판공사, 「세계대백과 사전Ⅱ(1984)」, P.315.)

20)파버·비렌, 「색채심리」, 김화중 옮김, (서울:동국출판사,1991), P.315.

21)파버·비렌, 전게서, P.135.

용한 감을 준다. 반면에 따뜻한 색에는 빨강, 다홍, 주황, 노랑 등 장파장쪽의 색이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이 있다.[22]

이러한 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의 조화에 따라서 구별하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거실에도 새로운 채색문화의 보급으로 수용자의 교정처우에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정신질환자가 있는 거실은 간단한 색채구성으로 치료효과가 있고, 외래인 접견실은 따뜻한 색과 서늘한 색을 섞어서 편하고 즐거운 느낌을 주며, 정신병 환자는 파란색·초록색·회색같은 서늘한 색이 적합하다.

상아색이나 연노란색, 연두색등은 혐오감을 주고 사람얼굴을 유령처럼 보이게 함으로 피하고, 식당에는 식욕을 돋구는 복숭아색이 좋다.

노란색은 자연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방이나 독거방이 좋고, 욕실이나 화장실은 분홍색이 좋다. 또한 거실에는 따뜻한 색으로 연한색을 사용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23] 이와같이 우리 교정시설도 이제는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색채문화가 정착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교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여가시간 활용의 개선

미결수용자 교정처우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미결수용자는 거실내 생활속에서 아침에 기상한후 저녁 취침때까지 미결수용자 각자에 따른 접견과 출정외에는 공식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출방시키는 경우는 운동밖에 없다.

운동을 제외한 출방은 무의탁자의 경우 거의 없다. 또한 공휴일이나 일요

---

22)민종철, 민종식, 「색채이론 문자디자인」, (서울:대아기획, 1987), P.71.
23)파버·비렌, 전게서, PP.325-327.

일의 경우 모든 미결수용자는 거의 출방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에서 거실내 수용생활에서 여가시간은 무한정하다<부표 미결수용자 동작시간표 참조>.

이러한 여가시간을 통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때의 교정처우는 의식전환에 중요한 역활을 할 것이라 여기면서 방송의 질적향상, 독서문화의 확대보급, 전통건전오락문화의 확대보급, 기타 문제로 나누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 방송의 질적향상

미결수용자에게 있어서 방송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매개체이다. 방송을 통해서 뉴스도 들을 수 있으며, 건전한 가요등 많은 것을 접할수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1일 4시간 내지 5시간동안 뉴스, 오락, 스포츠, 교육프로등 교화상 유익한 내용을 선별하여 생방송 또는 녹음방송으로 실시하고 있으나,[20] 이를 보다 전문성있게 수용자의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제작을 각 교정시설 단위로 제작 편성할 것이 아니라 미결수용자나 기결수용자 또는 소년수용자·여자수용자 별로 특성에 맞는 방송프로그램을 교정국단위나 각 지방교정청단위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보다 우수하고 교정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주간 또는 월별단위로 제작하여 교정시설내 교화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1일 5시간 방송을 하면 주당 35시간으로 교정국프로그램 14시간, 지방교정청프로그램 14시간, 자체프로그램 7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 할때, 방송의 질적향상은 물론 수용자 순화 및 교정처우에 도움이 될 수

---

24)김화수, 「행형법학」, P.287.

있다.

이를 위해서 수용자 전문방송위원회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수용생활중 방송문화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나. 독서문화의 확대보급

책은 인류가 수천년동안 쌓아온 사색경험과 연구와 관찰의 보고로서, 모든 분야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고 사색하고 학습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25]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도 이제는 수용자에 대한 독서문화를 새롭게 정착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금서냐, 아니냐 하는 기준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교정시설은 보다 우수하고 유익한 도서를 구비하여 많은 수용자가 새로운 지식의 축적은 물론 인격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한도서는 문공부 허가도서로서 음란행위,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받은 서적을 제외하고는 그 열독을 완화하여야 한다.[26]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가 개별상담을 통해서 독서지도를 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시킴은 물론 수용자 개인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독서를 통해서 독후감을 작성케하여 우수한 독후감은 소내 방송을 통해서 모든 수용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서 보다 많은 수용자가 우량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며, 교정국이나 각 지방교정청별로 수용자 독후감모음집을 책으로

---

25)도서관 교육 연구회편, 「새도서관 교육」, (대구:형설출판사, 1972), P.259; 한국도서관 협회, 「도서관학 개론」, (1979), P.237.

26)서울 지방 변호사회, 「법조춘추 137호」, (1989), P.74.

발행하여 시중에 판매하거나 전 교정시설에 보급하여 독서문화의 확대보급은 물론 수용시설에 독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교정기관별로 새마을 독서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

다. 전통건전오락의 확대보급

우리사회는 전국적으로 고스톱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는 실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써 우리의 전통건전오락문화가 다시 이땅에 정착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건전오락문화가 우리사회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실수용에 중점을 두고있는 미결수용자의 오락문화로서 확대보급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오락문화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①윷놀이, ②장기, ③바둑, ④오목, ⑤ 유객주, ⑥ 유객환 고누(우물고누, 호박고누, 밭고누, 참고누), ⑦칠교놀이, ⑧ 쌍륙, ⑨승경도 놀이, ⑩공기놀이 등이 있다.[27] 이들은 현대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우리의 건전한 전통놀이의 보존과 바람직한 놀이문화의 정착으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이룰 수 있듯이, 교정시설내 놀이문화로서 정착될때 수용질서확립과 소비지향적이고 사행적인 놀이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활을 출소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건전오락 문화를 전교정시설에 확대보급해야 한다.

라. 기타

미결수용자의 시설내 처우로서 여가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

27)문화부, 「전통놀이 모음집(1991)」, PP.3-74.

는 것으로는 신문보급의 확대나 라디오 개인소지 및 T.V시청허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신문은 1인 1종류 1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철폐하고 1인 2-3종류의 신문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용시설에서 신문열독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간지 또는 주간지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구태여 제한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교정시설에서도 이제는 개인소지품으로 라디오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디오 허용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점차 허용하는 쪽으로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또한 T.V시청은 거실내 설치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교정시설을 전술한 바와같이 벤담(J.Bentham)이 고안한 파노프치콘(Panopticon)같은 구조로 설립한다면 중앙에 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같이 미결수용자 시설내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미결수용자가 사회로부터 격리구금되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는 큰 형벌의 하나라 하겠다.

처우의 개선은 인격의 손상을 방지하고 재차 사회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미결수용자 인권 및 권익보호의 개선방안

1. 인권 개선

가. 미결수용법의 제정

미결수용자는 헌법제27조 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 의거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형법 제62조에서는 "행형법 및 그에 근거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형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결수용기능은 형벌집행기능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형벌집행에 관한 법률(행형법 및 동시행령)과는 별도로 통일된 법전을 두는 것이 타당하겠다.

미결수용 또한 시설내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미결과 기결의 구분수용은 물론 미결구금 시설의 확대증설에 기인할때 현행 행형법체제내에 미결수용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토록하고 있는 현실은 미결수용자 처우의 전문화에 위배되는 현상이므로 미결수용에 따른 별도의 통일된 법체계 확립이 미결수용자의 인권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미결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도 별도의 법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나. 미결수용기관의 독립설치

미결수용기관의 독립설치는 전술한 바와같이 수용기관의 전문화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개선에 있어서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다.

특히 행형법 제68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최소한 피구금자를 30일까지는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시행령 제175조). 유치장의 관리 및 처우를 수사기관에서 관장 하다보면 수사에 편리하도록 처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각국에서는 그 폐지를 주장하는 소리가 높다.[28]

---

28)이돈희, "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 「법조춘추」, 통권137호,

우리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경찰관서 유치장의 관리를 교도관이 파견되어 근무토록 하여 행형법의 적용을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미결수용기관의 독립된 시설은 수사·재판상 편리하게 법원이나 검찰청 인근에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의 본질에 맞는 처우를 할때 인권의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

다. 흡연의 허가

행형법 시행령 제83조에는 흡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정행정에서 흡연을 금지한 명분으로 화재예방을 유일한 이유로 제시 하였으나 화재예방의 문제는 흡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오늘날 흡연은 성인층 생활의 일부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이 쉽게 단절되지 않음을 볼때 오히려 교정목적상 흡연을 허가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 각국의 행형사정을 보더라도 배급제라는 제한은 있지만 흡연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2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정시설의 부조리중 금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조리가 제일 많다. 이는 교도관의 인격상실과 교정기관의 명예실추는 물론 국민에 대한 교정행정의 이미지 저해의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30]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있다"는 경제원리를 생각해 볼때 금연으로 인한 부조리는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흡연으로 인하여 수용자를 재소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

(1989), PP.57-58.

29)법무부, 「행형의 과제와 실험」, PP.65-66.

30)유남영, "현행 행형법 개정의 기본적 방향", PP.78-80.

176호, 1971. 10. 1)에 의거 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하여 미결수용자가 징벌에 처해지므로 받는 불이익은 미결신분으로서 자신에 대한 방어권행사에 많은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것도 감수하면서 흡연을 하는 수용자를 처벌위주로 단속하는것 보다는 흡연을 허용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교정시설내 방송이나 자체신문 등을 통해서 자율적인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나가야 한다. 이는 자율적의지에 따라 금연을 할 수 있는 행형이 바로 자율적 의지에 따라 갱생할 수 있는 행형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미결수용자 교정처우는 강제에 의해서 일시적 구금상태에 있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이, 강제에 의한 금연생활을 하다가 출소후 다시 흡연을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 금연 후 흡연은 계속 흡연보다 더 신체적 각 부위에 결정적인 위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의학계의 정설이다.

특히 미결수용자나 단기형 수형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교정처우없이 사회로 재복귀하는 실정에서 자율적인 갱생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시장개방으로 외국산 담배가 우리나라 시장의 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국산품 애용운동의 일환으로 우리의 담배나 우리의 국산차(인삼차·율무·쌍화차·녹차)를 애용토록하여, 출소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는 애국시민으로 국산품 애용운동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정신개조를 하여야 한다.

2. 권익 보호

가. 미결수용자 자변원칙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무죄를 추정하므로 엄격한 차원에서 수형자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행형법 제66조에서 "식량·의류·침구는 자변하되, 자변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이를 관급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변할 수 없는 자에게만 관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금시설내에서의 생활필수품은 최소한 보장하고 자변은 막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31]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미결수용자 권익보호에 따른 제 권리가 요구되는 반면에 행형의 평등한 집행과 자기책임에 따라서 철저히 자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 행형법 제62조 2항에 규정한 "자변이 불가능한 자는 관급한다"라고 한것을 "대여한다"로 개정하여 이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교정시설은 국가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서 범죄혐의자에게 무료로 시설을 대여해주고 식량·의류 및 침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범죄혐의자가 구금되었다가 무죄로 나갈 때 형사보상법(법률 제494호 1958.8.13)에 의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국가는 국가배상법(법률 제1899호 1967.3.3)에 의해서 피해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국가 배상법 제3조의 2).

이와같이 미결수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이들을 위해 탕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가기관인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던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환영 유치하여 노역을 하던지 하여

---

31)이돈희 변호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구금했으므로 자변이 강제되어서는 안되고 구금시설내에서의 생활필수품은 최소한 보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자변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이돈희, "행형법의 제문제", 「대한변호사 협회지」, 통권 제133호, (1987.9), PP.12-13.).

야 할 것이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도 반드시 미결구금일수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만큼 더 수형생활을 하여 자신이 저지른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 자신이 금전이나 육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자기책임 의식이 행형시설에서부터 정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국가예산의 절감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며 기타 교정처우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수용자의 의식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고로 미결수용자의 자변의 원칙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나. 의료 개선

미결수용자의 경우 교정시설내 수용생활로서 의료문제는 수용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교정시설에 의사·약사·간호사 등 전문의료인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수용자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부족되는 의료인을 보좌하기 위해 군위생병 출신중 치료행위를 한 유경험자 중에서 선발된 정복직원을 의무과에 배치하고 있다.[32]

그러나 교정시설에 전문의료인이 근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의무과에 배속된 교도관의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야간에 응급치료를 요할때 응급처치를 위한 전문의가 없으며, 외부의료 진료행위시 계호등 문제점이 많다.[33]

이를 위해서는 전문의료인의 확충이 시급하다 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때

---

32)법무부, 「교정예규(1982)」, PP.120-121.
33)대한 변호사 협회, 「인권보고서(1990)」, 제5집, PP.407-408.

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충분히 지원 받아야 한다. 또한 의무과에 정복교도관을 배치하는 것을 의료전문인인 간호사나 보건기사의 자격증을 갖춘 의료인으로 대체하여 의무과를 전문화 해야 한다.

즉 의무과근무 의료직공채를 별도로 시행하여 자격증있는 전문의료인으로 의무과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며, 이들이 숙직을 하면서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 외부진료행위시 계호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 지방교정청별로 교정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외부진료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우수한 전문의 확보로 수용자 의료행위를 통한 처우향상과 수용에 따른 질병연구도 할 수 있다.

교정병원 설립은 수용자 외부병원 진료시 개별계호 체제에서 종합계호체제로 전환되어 계호상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다. 외부교통의 개선

미결수용자의 외부교통은 구금기간중 외부와의 올바른 인식과 관계개선을 위한 접촉을 시켜줌으로써 석방후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특히 미결수용자의 방어권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34]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접견·서신 및 집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접견

현행 우리나라 접견제도는 "교도관 입회하에 면담요지를 기록하게 하고 있으며"(행형법 시행령 제58조 1항), "특히 교화상 필요시에는 교도관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8조 2항)고 하였다.

---

34)이돈희, "행형의 제문제", PP.13-14.

구미제국에서는 접견시 대화내용을 들음이 없이 도주방지 또는 보안상의 배려를 위해서만 먼곳에서 감시하고 특히 문제가 있는 경우만 듣는 감시를 하고 있다.

우리도 미결수용자 접견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접견시간이 최소한 30분은 보장되어야 하나 시설 및 입회교도관의 부족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35]

우리나라도 무입회 접견제도를 실시하되 문제수용자와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입회 참여토록 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접견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행 교정시설에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특별면회제도를 폐지하거나, 교화상 필요한 모든 수용자에게 전면 개방하던가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수용자가 범죄혐의를 받고 교정시설에 구금되었을 때는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동등한 처우는 수용자간에 위화감을 해소하고 수용질서를 확립하는데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부교통권의 하나로서 수용자를 위한 수신자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의 전 교정시설에서는 이를 확대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36]

2). 서신 및 집필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수발도 문제수용자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

35)유남영, 전게논문, PP.72-73.

36)법무부, 「외국의 교정제도」, P.211.

아니면 이의 검열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단 수신의 경우만 마약이나 금전 등의 물품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봉 검열하는 것 외에는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1인 1일 1통으로 제한된 서신을 제한없이 자신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므로서 외부와의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행형제도가 비교적 이상적이라는 북구에서는 서신의 검열이나 횟수제한 등을 1968년경부터 서서히 폐지해온 실정이다.[37]

또한 수용자가 특별히 급한서신을 발송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전보나 속달우편·등기우편제도도 각 교정시설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의 경우 필기도구는 매우 필요한 도구다. 우리의 교정현장에서는 필기도구에 관한 관리가 증거인멸 및 밀서유출 등의 이유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전면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행형법 시행령 제112조에서는 "교육받는 수형자에게는 거실에서 교육에 필요한 문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했듯이 미결수용자의 경우 외부교통에 필요한 서신과 자기지식 축적을 위한 노트필기 및 일기나 기타집필을 위해서 필기도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수사나 재판에 대한 방어권 준비로서 더욱 필기도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만약 필기도구로 증거인멸이나 밀서 등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엄격한 징벌을 통해서 통제를 하면 된다.

즉 "자유는 최대한 주되 잘못은 엄격하게 다룬다"는 교정이념의 정착이 필요하다.

---

37)이돈희, "행형의 제문제", P.15.

그러나 필기용지에 대해서는 규격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번호를 붙여서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는 세계불멸의 문학소설이 감방안에서 집필된 것도 여러개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 영국에서도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은 제한받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검열을 하지않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전체의 50%정도)에 대해서만 검열을 실시하고 필기도구는 거실내에 상시비치하고 있다.[38]

제5절 미결수용자의 징벌 및 권리구제방안

1. 징벌집행의 개선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구금되었을 때는 교정기관의 수용질서 확립에따라 일정한 자유의 제한을 하고 있으나 미결수용자 본질상 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재소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제시한 33가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벌에 처할 수 있으며, 징벌의 종류는 9가지가 있다.

이중 "금치나 감식처분을 받은자는 독거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서신·접견·작업·운동 및 도서열독을 금지한다"(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2항)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 징벌의 종류는 경고,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멸, 금치, 감식 4가지 뿐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제도는 수형자의 것을 미결수용자에게 적용하는 것 부터 시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징벌사범에게 수갑을 찬채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39] 일본에

---

38)법무부, 「외국의 교정제도」, P.211.
39)법무부, 「외국의 교정제도」, P.203.

서는 "감식이나 운동금지는 재소자가 자유인격자인 것을 부정하며 그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써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40]

이와같이 우리의 징벌제도도 미결수형자에 맞게 법체제가 확립됨은 물론 운동·접견·서신·도서열독의 금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미결수용자의 본질상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접견·서신은 완화를 하여야 하고 도서열독은 징벌중 전면금지보다는 일정한 수양서적을 넣어주고 이에 대한 독후감을 쓰도록 하여 교화시키는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하겠다.

또한 징벌기간이 현행 2개월까지 금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길다 하겠다. 독일의 경우 반복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4주간 금치에 처하고, 미국의 판례는 "15일을 넘는 징벌적 격리는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41]

또한 징벌위원회 구성을 교정기관직원으로 구성치 말고 보다 타당성있고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징벌위원으로서 사법부인사나 법률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교회사, 분류심의관 등을 참여시키며,[42] 징벌절차를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어 법률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징계에 불복이 있을때는 항고 또는 재심청구의 기회를 인정토록 하고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징계절차는 교정기관에 위임하여야 한다. 징계절차에 법률이 적용될때 이를 재판에 활용하여 현행 형사소송법 제57조에 의하면 "미결수용자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그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억류에 산입한다"라고 했듯이 징벌위원회

---

40)유남영, "현행 행형법 개정의 기본적 방향", P.71; 대판 지방재판소 판결, 「행정예집」, 통권제9권

41)유남영, 전게논문, P.71.

42)정갑섭, 「교정학」, PP.305-306.

에서 결정한 징벌일수 만큼 판결전 구금일수에서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징벌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면 한다.

2. 권리구제의 방안

미결수용자의 법적지위에 기초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처우에 대한 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방안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청원제도(행형법 제6조)와 소장면담제도(동 시행령 제9조)가 있으나,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어느정도의 정형적 처리의무가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구제제도로는 결함이 많다.[43] 이러한 권리구제방안으로 행정심판의 청구, 사법적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행형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가. 행정심판의 청구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내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입은 수용자가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심사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행형법 및 동시행령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수용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는 행정작용으로 부터의 권리구제(행정구제) 및 법규적용의 적정성 확보(행정통제), 쟁송사항(부당한 행정처분), 출소기간(재결청이 직권으로 출소기간의 경과를 유서할 수 있음), 심판기관 및 심판절차 등에 있어서 행정

---

43)이돈희, "행형법의 제문제", PP.17-18.

통제적인 특색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청구권이 실질적인 수용자의 권리구제로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행형법령에서 교정시설이 공공영조물의 관리규정으로서 성격을 탈피하여 수형자의 권리보장 규범으로서의 입법상의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요망된다.[44]

나. 사법적 권리구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내에서 위법한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45]

이러한 사법적 권리구제는 독일·일본·미국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실체적 형식으로는 ①행정적인 행형정책의 변경을 요구 명령하거나, ②수용시설의 수용「서비스」의 개선을 명령하거나, ③극히 조악한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④교정시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의 형사적 처벌을 하는것 등이 있다.

이처럼 교정행정이 사법적 구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세계적인 법률추세로서 우리의 행형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시도가 있어야 한다.[46]

---

44)법무부, 「행형의 과제와 실험」, PP.76-79.

45)행정소송은 공무원이 업무수행상 위법 또는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법부가 행정부의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행정 재판이다.(유종해 외 3인공저, 「행정학사전」, (고시원,1989), P.952.)

46)이돈희, "행형법의 제문제", PP.18-20.

다. 헌법 소원심판의 청구

구치소등 교정시설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미결수용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신청을 한 미결수용자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2항).[47]

라. 행형 옴부즈만(ombudsman)재도의 도입

행형법상 미결수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위와같이 제시하였으나 입법론상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정시설이 개방화 되어야 한다. 이는 교정시설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수용자의 인권이나 처우가 법에 의해서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각국에는 행정일반에 대한 옴부즈만(Ombudsman)제도가 채용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스웨덴에서 1809년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때 그것을 신속히 구제하는 제도이다.[48]

행형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한 것은 행정의 집행을 받는 대상이 폐쇄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가운데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하여 행형당국이 행하는 행형의 정당한 집행을 감시하고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교정기관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행형

47)법무부, 「행형의 과제와 실험」, P.79.
48)백완기, 「행정학」, (서울:박영사,1991), PP.412-413.

옴부즈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형 옴부즈만은 수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수용자와 무입회면접, 조사권, 서류열람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무런 검열없이 서신수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도 197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당한 사법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48] 영국에서는 방문위원회가 모든 교정시설에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용자의 고정사항을 청취하는 지역대표위원단을 구성하는 것과 각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교정행정의 수준이나 처우 등을 조사하고 수용자의 규칙위반 사항을 심의하는 일을 한다.[49]

또한 독일에서는 밀실행형의 폐해를 막고 위법적 처우의 시정과 행형현실의 공개 등을 통해서 행형에 대한 국민적감시를 실현함과 함께 사회적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시설 심의회」가 있으며, 이는 행형기관 아닌 변호사·법률학자 등 일반사회인으로 조직·구성되어 수용자와 만나 고통을 듣게하고 행형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설내 출입을 허가하며 그들로 하여금 행형실태를 공적으로 보고하게하고 아울러 사회내의견을 반영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50]

이와같이 우리의 교정행정이 수용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행형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보다 진일보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정행정이 밀행주의·폐쇄주의·보안계호 제일주의니 하는 고정관념과 인권의 사각지대·복마전·범죄학교라는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행형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9)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P.141.
50)법무부, 「외국의 교정제도」, PP.213-214.
51)이돈희, "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 PP.54-55.

제6절 교정조직의 개선방안

1. 교정기구의 개선

미결수용자의 교정처우를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교정조직을 개선하여 전문화·능률화·분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선교정시설과 중간관리감독청인 지방교정청에 대한 중앙기구의 효율적인 감독과 통제를 위해서 법무부 교정국을 중앙교정청으로 승격·개편할 필요가 있다.[52] 이에 따라 교정청·지방교정청 및 일선교정시설의 조직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가. 중앙 교정청 설치

교정행정의 중앙조직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정국이다. 교정분야의 업무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교정의 과학화·사회화를 위한 교육형교정을 위해서 또한,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에 맞추어 범죄인을 재사회화 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서 교정처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국이 법무부 1개국으로 존재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전문화추세에 있는 현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수용자 교정처우에 지장을 초래할 뿐이다.

교정청이 설립되는 것은 교정업무의 전문화로 수용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정교화시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는 물론 범죄인을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

---

52)안해균, "교정행정의 발전과 문제", 「발전정책 연구과정 제10회 국가정책쎄미나 자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P.517-518.

한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업무의 총수가 현재처럼 교정업무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인으로서 검찰의 검사장급에서 맡고 있듯이 앞으로 신설될 교정청장도 검찰의 고검장급으로 내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실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53]

현대는 전문화 시대다. 교정업무는 이제 교정인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교정분야가 타분야에 대해서 뒤지고 있는 현상은 결코 교정인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교정국장을 전문교정인이 아닌 검찰의 검사장급에서 순환 보직함으로서 교정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56호,1963.1.10)제4조 1항에서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라고 했듯이 교정업무를 정확히 모르는 비교정인인 교정국장으로부터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교정행정에 있어서 밑행주의와 눈치행정이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정청의 승격과 함께 교정업무는 교정인에게 맡겨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교정국장을 역임한 원로들로서 교정청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정행정의 발전에 기여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1만여 교정인은 누구나 9급 교도에서부터 교정청장까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때, 교정인으로서 자기본분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서 수용자 교정교화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

---

53) 「세계일보」, (1991.5.28), P.19: 김동철, 「교정행정」, (법조문화사, 1988), PP.184-187.

라 현재 교정직의 직급이 2급 교정이사관에서 교정 관리관으로 격상시키야 한다. 또한 유능한 교정인이 교정청장을 맡아서 교정업무의 전문화와 함께 교정행정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정국에는 6개과< 표 3-9 참조 >가 있으며, 그 중에서 보안1과(법무부직제 제14조 1항)의 업무중 재소자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이 있다.[54]

이제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정국에서부터 세분되어야 한다.

교도소의 수형자와 구치소의 미결수용자·보호감호소의 감호자는 엄격히 그 신분의 차이에 따라 교정처우도 달라야하고 그 처우를 맡고있는 업무의 분야도 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1과를 세분하여 보안1과는 교도소에 관한 업무를, 보안3과를 신설하여 구치소에 관한 업무를, 보안4과를 신설하여 보호감호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방 교정청

우리나라의 교정사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하나로서 1991.11.1 개청한 지방교정청을 들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교정국과 일선교정시설간의 중간감독기관이 없어서 교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던 것을 해소하고 보다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서울·대전·광주·대구에 각각 지방교정청을 설치하였다(도표 3-10참조).[55]

<표 3-10>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교정시설의 분포가

---

54)김화수, 「행형법학」, P.96.
55)법무부, 「교정」, (1991.11), p.106.

균형잡혀 있지가 않다. 앞으로는 교정의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업무가 분권화 되어야 한다.

즉 그 지방에서 발생한 범죄와 함께 수용자를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각 지방교정청별로 수용하여 분류하고 교정교화시킬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다시말해서 서울지방교정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용자는 서울지방교정청내에 있는 구치소나 구치지소에 수용하고 형이 확정되었을때 서울 지방교정청관내에 분류센타를 설치하여 분류한후 타 지방교정청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교정청 관내에 있는 교도소(소년교도소·개방교도소·여자교도소)나 보호감호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다. 일선 교정시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도 이제는 국제화 추세에 맞게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특히 미결을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를 볼 때 소장과 과장급 사이에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부소장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소장제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교도소장 아래에 부장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56] 우리나라에서는 부소장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제1부소장은 보안과·출정과·접견과·경비교도대·용도과를 지휘감독하되 정복교도관 중에서 교정감으로 보하며, 교무과·분류과·명적과 또는 작업과를 지휘감독하는 제2부소장은 사복교도관중에서 4급에 해당하는 교회관이나 분류심사관이 맡도록 하며, 서무과·의무과는 소장 직속기관으로 한다<표4-2참조>.

---

56)신성섭, "한국 교정행정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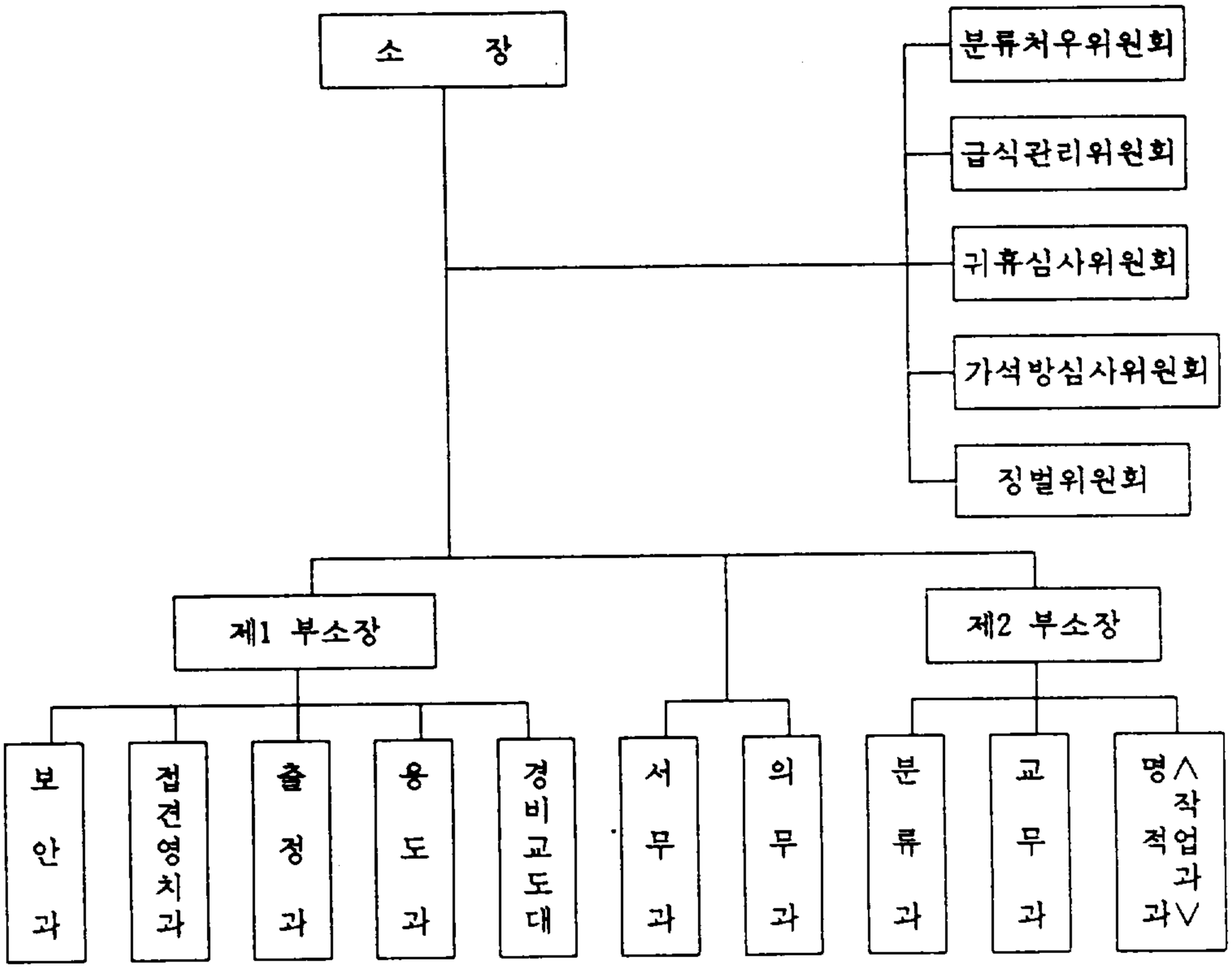

또한 교정시설에서 보안과의 업무가 방대하고 이에 따른 직원의 절반이상이 보안과 소속이면서 1개 과장이 지휘·통솔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보안과 직원이 100명 이상되는 교정시설은 보안과를 보안제1과(갑부), 보안제2과(을부), 보안제3과(병부)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58]

---

58)정갑섭, 「교정학」, P.445.

2. 교도관 문제의 개선

미결수용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교정조직의 개선과 함께 교도관의 처우도 향상되어야 한다. 교도관 문제의 개선으로는 교도관 자질향상, 전문인력 확보, 처우의 개선에 관해서 알아보자.

가. 교도관 자질향상

교도관 자질향상은 교정처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미결수용자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는 교도관의 우수인력 확보, 교육훈련, 교도관철학의 확립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우수인력 확보

교정행정에 있어서 수용자의 관리는 도주나 증거인멸 예방 및 교정시설의 수용질서 확립에 있지만, 교화는 인간의 심성을 바로잡는 일로서 교화를 시키는 사람이 교화를 받는 자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정시설에서 교화작용이 불충분하여 재범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적수준이 높은 양질의 교도관을 확보한 후 교정교화 전문교육훈련 기관에서 재교육시켜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이는 현직에 맞는 교도관의 재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의 범죄는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므로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적절한 교정치료의 방향을 제시하여 수용자를 올바르게 선도·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주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문지식을 갖춘 양질의 교도관인 전문가가 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59]

---

59)황찬성, "우리나라의 비행소년 감별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양질의 교도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59]

㉮최소한 대학에서 교정관련분야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일반상식이 풍부하고 인간생활에 이해심이 풍부한 사람.

㉰상상력 및 추리력이 풍부하고 판단력이 예리한 사람.

㉱공간 및 시간개념이 정확하고 언어개념이 풍부한 사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교성이 풍부한 고매한 인격을 갖춘사람.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사람.

㉴숭고한 교육정신을 겸비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회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

㉶침착한 감정을 소유한 사람.

㉷신체가 강건하고 지구력이 있으며, 체격이 너무 왜소하거나 너무 비대하여 정상 표준에 미달하지 않은 사람.

㉸얼굴에 보기 흉한 흉터나 특징적인 것이 없는 사람.

㉹카운셀링 요령을 터득한 사람으로서 래포(Rapport)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

㉺행태징후분석(behavioral symptoms analysis) 능력이 있는 사람.

㉻사건의 전체흐름을 파악할 줄 알고 전체와 부분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양질의 교도관 확보 및 자질향상 교육훈련은 쉽지 않다. 이는 교도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한된 교정시설내 근무 및 제복근무로서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이 양질의 교도관 확보를 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81), PP.1-2.

60)신성섭, "한국 교정행정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PP.123-124.

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7급이상의 교정공무원 부터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미연방교정시설의 경우에는 교정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자격조건으로 ① 3년간 타인을 감독하거나 지도한 경험이 있거나, ②성인을 교육시킨 경험이 있거나, ③교정 또는 갱생보호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④사회사업기관에서 카운셀링 경험이 있거나, ⑤광범한 대인관계의 판매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2년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4년제 대학졸업자는 3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며, 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이수한 사람은 GS-6(간부급)에 채용될 수 있게 하므로써, 신규교정공무원의 3분의 1이 학사 취득자이고 약 70%가 대학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61]

또한 일본의 경우도 1986년에 교정공무원 학력수준이 단기대졸 5.9%, 대졸 31.6%에 비하면,[62]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 학력수준은 초대졸 6.5%, 대졸 12.9%, 대학원졸 0.4%로 비교적 낮다 하겠다.

특히 근속연한 3년이내의 교정직 공무원이 1990년도에 30.4%나 되며 이중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많다.[63] 이들이 교정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처우나 진급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에 있어서 우수한 교도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용에 있어서 자격조건을 두거나 아니면 일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중에

---

61)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PP.128-129; U.S.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Prison System(1989)」, P.8.

62)송주석, "일본 교정의 조직과 운영상황", P.101.

63)법무부, 「교정국 통계자료(1991)」.

서 교도관으로 양성하기 위한 엄격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보다 진보적인 자격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우수하고 양질의 교도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9급공채한 교도관중에서 고졸이상인 자는 8급승진에 있어서 자동승진경우(현행 8년)1년을 단축하고, 초대졸은 2년, 대학졸업자는 4년, 대학원 졸업자는 6년을 단축해 준다. 승진시험의 경우(현행 2년) 대졸 및 대학원졸업자는 1년간 단축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

또한 8급에서 7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졸의 경우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현행 3년)을 1년정도 단축해 주고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2년정도 단축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7급으로 승진시키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

그리하여 7급이상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구성하며 5급 승진때 까지는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토록 하며, 교정기관장급은 반드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토록 교도관 승진에 자격기준을 제시했으면 한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정고시(중·고과정)나 한국방송통신대학·독학학위 취득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교도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서 다양한 재소자들을 교정처우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교도관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또한 공직자로서 품위를 갖추었을때 수용자도 이를 본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교정시설에서는 교도관 자질향상을 위한 교정자료실과 독서실을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우수한 교정인력을 확보하고자 국가공무원법상 "국비 장학생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현재 국내에 유일하게 있는 경기대학교 교정행정학과를 교정우수인력 확보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신입생 선발부터

교육 및 채용까지 교정당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겠다. 차후 교도관 자질향상을 위한 교정전문대학이나 교정대학을 설립하여 우수한 교도관을 양성해야 한다.

이들이 졸업후 최소한 1년 이상 8급으로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습득한후 교정간부(7급)로 승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2). 교육훈련

교도관의 교육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교도관의 직문분야 및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신임교도관 9급의 경우 4주간에 27개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고 지도하면서 교정교화를 시켜야 할 교도관이 일정한 자격조건없이 채용되어 4주간 114시간에 걸쳐 27개과목을 완전히 소화하기란 실로 불가능하고 단지 간수로서 보고 지키는 훈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교도관 채용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조건을 제시하여 채용하던지, 아니면 교도관 채용에 있어서 계호직 전문교도관과 일반교도관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던지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임교도관 교육기간을 최소한 8주에서 12주정도는 되어야 한다.

즉,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진후 일선에 배치하던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한 교도관을 모집하던가, 아니면 계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모집하여 전문교육을 시키던가 하여야 한다.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1951.3.31 형무관 학교가 탄생했다가 1962.5.1 교도관 학교로 직제가 개정되어 교도관 교육훈련을 전담케 되었다.

이후 1972년 11월 9일 법무연수원이 대통령령 제6376호로 발족되어 교정

공무원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1986.6.30일 동연수원에 교정연수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교도관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64] 보다 전문적인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다시 교도관학교의 신설이나 세무전문대학·철도전문대학이나 경찰대학같이 교정전문대학이나 교정대학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교정의 전문화와 함께 우수교정공무원 배출은 물론 교정공무원 재교육기관으로서 교정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 교도관 철학의 확립

교도관의 자질향상은 학력이 높은 것만이 최상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을 다 구비할 수 없듯이 우선적으로 학력의 여부를 척도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도관으로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교도관으로서 철학의 확립은 우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윤리헌장과 공무원의 신조를 마음속깊이 새기면서 어떤 공무원보다도 고도의 성직자적 사명감과 덕성을 고루 갖춘 인격의 소유자로서 범죄자를 교정교화 할 수 있는 교육자·인간개조자로서 역활을 담당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며, 조직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가 있다. 우리는 교정행정을 맡고있는 공무원으로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교정(矯正)이란 단어는 국어 사전에서 볼때 "틀어지거나 굽은 것을 바로 잡음"이라고 했으나 행형의 의미에서 교정은 인간의 성격을 교정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최근 미국교정의 이론과 실제를 지배하는 개념이다.[65]

반면에 행정(行政)이란 공공성을 지닌 협동적인 집단행위이며 이는 고도

---

64)김화수, 「행형법학」, P.109.
65)김종건, 「한국 교정행정 발전론」, P.23.

의 합리성을 지닌 정책형성의 과정이라 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윤리로서 행정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개인의 윤리관·가치관·사고방식등에 따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또한 행정의 목표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와같이 행정윤리에 위배되는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행정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66]

부정부패란 공직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정부를 불신케하고, 행정기능의 약화, 질서파괴 등의 악영향이 파생될 수 있으며, 성실한 공직자와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좌절시키게 된다.[67]

우리는 교정행정을 담당할 교도관으로서 교정과 행정의 윤리에 입각해서 교도관 개인이 교정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을 인식하여 청렴결백한 청백리로서 지행일치(知行一致)는 물론 자기를 수양하면서 수용자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교도관으로서 철학이 확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러한 교도관 철학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도관은 청백리 공직자로서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둘째, 교도관은 성직자적 자세를 갖춘다.

셋째, 교도관은 교육자로서 자질을 갖춘다.

넷째, 교도관은 희생정신을 가진 봉사자이다.

---

66)신종순, 「행정의 윤리」, (서울:박영사,1971), P.16;이서행, 「청백리 정신과 공직윤리」, (서울:인간사랑,1991), P.27.

67)김해동, "관료 부패에 관한 연구Ⅰ", 「행정논업」, 제10권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72), PP.174-177; 김해동, "부패와 행정문화의 3중구조", 「월간조선」, (1980.8), P.290.

다섯째, 교도관은 인격과 덕성을 갖춘 지식인이다.

여섯째, 교도관은 범죄자 교정교화에 사명감과 긍지를 갖는다.

일곱째, 교도관은 민주적 교정행정을 수행하는 역군이다.

여덟째, 교도관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초석이다.

이와같은 교도관 철학을 교정공무원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교정행정기관이 범죄학교·복마전으로 치부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존경받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도관전문인력 확보

교도관은 전문화되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대 행형에 있어서 결코 쉬운것은 아니다.

교정행정에 있어서도 각 부분이 전문화 되어야 함은 물론 전문직교도관의 충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결수용자는 시설내 처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담전문직·의료전문직은 필수적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전문직은 6%로 일본의 1984년도 7.6%나 미연방교정국의 1988년도 43%에 비하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결수용자 교정처우를 위해서 상담자 역활을 할 수 있는 교회직은 현재 일선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구제에서 관구당 1명 이상씩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결수용자 처우에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의료직전문요원을 확충하여 의무과는 의료관계자로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격증있는 의무과 요원이 숙직을 통해서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보안과에 근무하는 교도관도 전문화해야 한다. 정복교관의 경우 행정과 계호 구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계호직 교도관과 일반직 교도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교도관 채용시 구분하여 채용하며, 현재 교도관 부족으로 각 교정시설마다 특채로 채용하는 교도관은 전원 계호직으로 분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도관 업무수행에 있어서 교도관이라는 명칭으로 구치소·교도소·보호감호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실태에서 구치소 전담교도관·교도소 전담교도관·소년수 전담교도관·보호감호소 전담교도관으로 세분하여 각자 업무의 전문화로 각 분야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교도관이 전문화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교정처우가 이루어졌을때 교정교화는 물론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도관처우의 개선방안

교도관처우의 개선은 수용자처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교도관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수용자 재범방지나 교정교화에 임한다는 것은 실로 모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래도 지금까지 대다수 교정공무원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히 임해왔던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교도관의 비리로 인하여 교정전반에 걸쳐 국민적 이미지 실추는 가슴아픈 현상이다.

교도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므로서 수많은 범죄자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교도관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성직자적 자세로 수용자 교정처우 및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도관 처우개선으로 근무조건, 수당의 현실화, 복지문제, 승진문제로 구

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도관의 근무조건은 열악한 상태다.

현재 교도관 야근자는 완전 3부제가 정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식시간을 포함하여 주49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중 야근자 근무시간은 1일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 그리고 다음날 9시간 (주식시간포함)근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24시간 근무는 휴식시간을 공제하고 16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고 있다. 즉 24시간 근무중 중식1시간, 저녁식사 30분, 야간근무시 교대휴식 1시간, 취침 5시간, 아침식사 30분 하면 8시간이 공제된다.

공무원이 주식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9시간일때, 교도관도 주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야간근무시 교대휴식시간은 비상대기조 역활을 하므로 이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야근시 1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며, 3주에 1회 일요일 휴무(9시간)와 6주에 1회 토요일 휴무(4시간)를 공제하면 주당 근무시간이 61시간40분이 된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 49시간에 비하여 주당 12시간 40분 더 근무하는 것은 물론 3일에 1회씩 야간근무를 한다. 특히 야간근무는 "생물학적 리듬, 수면생리, 사회 및 가정생활 등 여러가지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므로 50대부터는 건강에 위험이 온다"고 정도언 교수가 언급했듯이(동아일보,92.4.18), 교도관의 근무조건은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월30시간 즉 1일 1시간으로 주 7시간분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주당 5시간40분은 더 근무하고 있다. 이의 개선책으로 월요일 절반 휴무제 도입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30시간에서 50시간으로 해야 한다.

둘째,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교도관 특수지 근무수당(대통령령 제10957호 82.12.20)은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고 23,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와 생활하는 교도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 수당이 현실적으로 교도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상되어야 한다.

또한 교도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금액을 현실화 해야 한다. 현재 휴가보상비는 각자 본봉의 24분의 1이 하루분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렇게 계산한 1일분을 다시 8로 나눈분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예. 본봉이 441,600원일때 1일분이 18,400원이고 1시간분이 2,300원이다. 월 50시간 초과근무시는 11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이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의 처우개선에 획기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도관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소한 기본급 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2년 6월부터 지급되는 야간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했듯이 각자 본봉에 따른 1일분의 50%정도 즉, 앞의 예에서 보듯이 1일 9,200원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휴일근무 수당도 신설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세째, 교도관의 복지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중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기관은 도심지로 들어와서 건축되겠지만, 현재의 교정시설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교도관의 출퇴근 문제가 심각한 현상이다.

교정에 몸담은 교도관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조건으

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교정시설 인근에 충분한 교정아파트를 정부임대주택 형식으로 건축하여 교정직원이 적당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기거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지옥에서 해방될때 그에 대한 혜택은 결국 재소자 교정교화에 노력함으로써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교도관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내복을 입고, 한여름 장마에 잠바를 걸치고 야간근무를 할 때 비애를 느낀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의 이직 희망직원이 전체의 87.1%나 된다는[68] 사실을 상기할 때 이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교도관 복지문제로서 우선 난방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수용자 난방기간이 최장 105일을 규정하고 있다.[69]

이는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초순까지 밖에 난방이 안된다. 가을이나 초봄의 야간 기온은 매우 낮아서 춥고 서늘한 체감을 느낀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교도관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10월1일 부터 익년 4월30일 까지는 난방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정복공무원이 정복의 세탁을 위해서 옷을 집에들고 왔다 갔다 하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정시설내에 반드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료세탁소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안과내에 교도관 자체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도관 복지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품위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68)박재윤,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교정의 현실과 진로」,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1), P.35.

69)법무부, 「1992년 예산 명세서」, P.438.

넷째, 교도관의 승진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교도관의 불만요인으로서 가장 심각한 것은 「좋지 못한 근무환경」과「직무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것」이며, 그 다음이 바로 승진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교정공무원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2-4급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5급은 승진시험에 의하며, 6급이하 교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방법이 있고, 7급은 승진시험과 8급에서 5년이상 근속한자중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이 있으며, 8급은 6급과 같다.[70]

또한 7급이하의 교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71] 9급에서 8급 승진시험은 1986년이후 한번도 없었고 현재 만8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자동승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수 교도관이 남아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력에 따른 자동 승진기간의 단축제도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일정기간 근무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자격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격조건을 갖춘 교도관을 우선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우수인력 확보와 근무의욕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도관의 정기 인사이동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즉 한교정시설에 5년이상 근무치 않도록 하고, 6급까지는 각 지방교정청내에서 인사이동을 하되 구치소는 구치소별로 교도소는 교도소별로, 감호소는 감호소별로 전문성을 살리면서 인사이동을 하여야 한다.

---

70)김화수, 전게서, P.108; 법무부, 「교정」, (1991.10), P.125.
71)법무부, 「교정」, (1992.3), P.149.

교도관 승진시험은 자주 실시하되 상위직으로 갈수록 자격조건을 제시했으면 한다. 몇과목 승진시험과 근무평정 점수로만 승진을 시킬 때 교도관 자질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될 수 도 있다.

교도관의 전문지식 습득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 교정시설마다 교정자료실과 독서실을 구비토록하고 각 지방교정청마다 교정도서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일본은 교정협회에서 교정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7,000여권의 교정관계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72]

---

72)법무부, 「외국의 교정제도」, P.93.

제5장 결 론

"형기를 마친 폭력배가 조직재건에 나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는 중앙일보(92.5.4)기사를 대하는 심정은 참으로 난감할 뿐이다. 사회의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격리·구금과 더불어 시설내 교정처우를 통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오늘날 교정의 사명이다. 그런데 형기를 마친 폭력배가 다시 폭력조직 재건에 나섰다는 것은 교정처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지금까지 미결수용자는 적극적인 교정처우의 대상이 아니라서 처우에 소홀히 하고 단지 구금을 통한 도주와 증거인멸 방지에만 치중하였다.

그러나 미결수용자가 일정기간 수용생활을 하면서 집행유예·벌금·보석 등으로 출소하거나 단기형 수형자의 경우 미결수용기간동안 재판을 진행하다가 재판이 끝나면 형기가 얼마남지 않아서 실질적인 교정처우없이 출소하게 된다.

이와같은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본인은 미결수용자 교정처우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구치소에서 10년간 직접 현장실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미결수용자의 교정처우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교정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제시해 보았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교정처우는 반드시 그들을 관리하고 교정처우하는 교도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교도관에 대한 문제점과 자질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았다.

전술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건수가 1989년 이후 100만건이 넘

어섰으며, 각종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다.

중앙일보(91.1.1)가 사회도덕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중 91%가 범죄때문에 불안하다고 응답했다.[1]

이렇게 사회불안 요인으로 자리잡은 범죄가 대부분 누범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교정처우의 문제점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 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도 이제는 수형자위주의 교정처우에서 전수용자에게 교정처우를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교정처우에 있어서도 미결수용자, 수형자, 보호감호자를 구별하여 전문화된 교정처우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소년수·여자 등도 별도의 전문화된 교정처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설의 전문화, 교도관의 전문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시설의 전문화와 함께 교도관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전문적인 교정처우를 실시할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인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면서 범죄자 교정처우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미결수용자 중심으로 몇가지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미결수용자는 시설내 수용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혐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때 전과위주의 구속수사를 탈피하고 , 범죄의 경·중에 따라 불구속수사나 또는 소추기관인 검찰에서 기소편의주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을 과하므로서 미결수용자를 격감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 등을 통하여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출소하는 미결수용자를 감소시킬 수

---

1) 「중앙일보」, (1991.1.1), P.21.
2) 전대양, "누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9), PP.94-101.

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줄일 수 있고 초범자의 경우 교정시설을 통해서 악풍에 감염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미결수용에 따른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둘째, 미결수용법이 제정되어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시설또한 미결수용자에 맞는 시설 기준을 제정하여 미결수용법에 제시 하여야 한다.

미결수용법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U.N.의 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에 입각해서 국제수준에 맞는 법체계를 확립하여 미결수용자 처우를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교정행정의 발전과 수용자 교정처우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정조직으로서 중앙교정청이 신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교정기관의 총수는 반드시 교정인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교정청이 없이 지방교정청이 설치되어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또한 교정기관의 총수가 전문직 교정인이 아닌 비전문인이 맡고 있다는 것은 현대의 전문화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교정행정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중앙교정청의 시급한 설치는 우선 교정행정의 일원화로 교정행정의 기획·시행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극대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일선교정시설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소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며, 보안과의 세분화 작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넷째, 교도관의 인권개선은 재소자 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정조직이 군대처럼 엄격한 계급서열로 이루어져 있다. 엄격한 계급서열과 수용자 교정처우가 과연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도 이제는 교도관을 계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여 계호직은 수용자 관리 및 규율유지에 중점을 두는 단순한 계호업무에 전념케하고, 일반교도관은 수용자상담 및 교정처우에 중점적으로 임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현재같이 엄격한 계급서열이 아닌 연구원같은 체제가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연구원제도의 도입은 교정행정이 곧 일선행정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일선연구원의 실무경험 등이 교정기획을 세울 수 있는 하의상달 체제로서 계급사회의 부조리 등 해소는 물론 교도관의 인권개선 및 수용자의 교정처우에도 그 효과가 매우 지대할 것이다.

수용자 교정처우는 교도관이면 누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함께 해야 한다. 이때 일선교도관이 수용자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상사에 의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면 이는 실로 교정행정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상사가 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상태가 계속될 경우 뇌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학계에서 확인되어 있듯이 상사에 의한 스트레스도 교도관 직업병의 원인일 수 있다.(중앙일보,1992.5.22) 이러한 체제속에서 수용자 교정처우란 큰 기대를 할 수 없다.[3]

다섯째, 교정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정처우의 기법이 과학화 하여야 한다.

교정시설도 이제는 대인계호에서 대물계호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교도소의 상징인 망루도 제거하여 전자감응장치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각 사동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며, 또한 각 거실문마다 자동시건장치를 설치

---

3)박재윤,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P.33.

해서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수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현행 계호업무 위주에서 교정처우 업무중심으로 전환 할 수 있다.

또한 교정처우의 기법을 경험과 학문적 이론을 접목시켜 연구하고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인 처우기법이 발견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도관의 전문화와 자질향상은 교정처우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이다.

교도관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고서 수용자를 전인교육 시킨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교도관이 수용자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므로 경찰대학과 같은 교정대학의 설립은 시급한 문제이고, 현직 교도관의 재교육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교도관이 교정시설에서 범죄자 교정처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범죄중 누범에 의해 발생하는 이유중 첫번째가 미결구금시설부터 효과적인 교정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범죄예방·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가 미결수용자 수용상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교도관의 전문화와 자질향상은 미결수용자의 시설내 교정처우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교정간부의 등용에서 공개채용이나 교정대학 출신자는 교정행정의 최일선에서 8급으로 1년정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결수용자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이며,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교정공무원들은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교정교화시켜서 우리사회의 역군으로 재 탄생 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정행정은 우리실정에 맞게 새로운

교정처우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법이전에 도덕적 윤리를 바탕으로 악의 세상에서 죄를 짓지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에 의한 교정처우 보다는 자율적 의지에 의한 갱생이 될 수 있도록 수용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권리에 대한 충분한 처우와 함께 의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책임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범죄자를 교정교화하는 것은 교정시설과 교도관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의 가족과 주변환경이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에서 보듯이 환경이 범죄를 만들고 있다. 범죄자 가족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속에서 주변환경과 주위사람들의 정성어린 관심이 범죄자에게 집중될 때, 이땅에서 범죄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표〉 미결수용자 동작시간표.

(1992 년 현재)

시 간	내 용	비 고
06:00 ~ 08:00	기상나팔. 기상후 침구정돈 및 청소. 점검실시. 세면 및 아침식사.	계절에 따라서 기상 시간이 (06:00~07:00) 변경된다.
08:00 ~ 12:00	출정. 운동. 목욕. 접견. 치료 등 실시. (휴식. 오락. 독서. 방송청취.)	아침 09:00 에는 인계인수 점검한다.
12:00 ~ 13:00	정오 점검 실시. 점심식사.	정오 점검은 생략 할 수 있다.
13:00 ~ 17:00	출정. 운동. 목욕. 접견. 치료 등 실시. (휴식. 오락. 독서. 방송청취.)	
17:00 ~ 18:30	폐방 점검 실시. 저녁식사.	저녁식사는 17:30분에 한다.
18:30 ~ 21:30	휴식. 오락. 독서. 방송교육 청취.	
21:30 ~ 06:00	취침나팔. 취침. 명상의 시간.	

* 자료: 법무부, 「교정예규(1982)」, PP.283-284.

* 자료: 법무부, 「교정예규(1982)」, PP.283-284.

주 : 1. 동작시간표는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다.

2. 위 동작시간표는 5월달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1. 단행본

김동철. 「교정기행」, 서울 : 법조사, 1988.

김용우. 「행형문집」, 서울 : 국민서관, 1982.

김종건. 「한국 교정행정 발전론」, 서울 : 법문사, 1987.

김화수. 「행형법학」, 서울 : 동민출판사, 1991.

김화중. 「색채심리」, 서울 : 동국출판사, 1991.

민종철 외. 「색채이론 문자 디자인」, 서울 : 대아기획, 1987.

백완기. 「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91.

신종순.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1971.

양승붕. 「새 인간교육」, 서울 : 대영사, 1983.

유종해 외. 「행정학 사전」, 서울 : 고시원, 1989.

이서행. 「청백리 정신과 공직윤리」, 서울 : 인간사랑, 1991.

이정찬. 「교정 보호론」, 인천 : 선민출판사, 1983.

———. 「교정 심리학」, 인천 : 선민출판사, 1981.

장병림. 「범죄 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60.

정갑섭. 「교정 심리학」, 대구 : 대구교도소, 1987.

———. 「교정학」, 서울 : 을지서적, 1990.

———. 「미국 연방교정실무」, 부산 : 신한출판사, 1985.

조영재. 「한국의 서정쇄신론」, 서울 : 율성사, 1980.

2. 논문

강대성. "최근의 일본교정통계", 「교정」, 6월호, 법무부, 1991.

권태정. "재소자 분류수용 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의 현실과 진로」,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1.

김길자. "교정시설내의 상담실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김보환. "한국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1991.

김해동.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I ", 「행정논업」, 제10권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2.

——— "부패와 행정문화의 3중구조", 「월간조선」, 8월호, 조선일보사, 1980.

남상철. "한국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안", 「교정」, 6월호, 법무부, 1991.

박송주. "일본 교정제도 및 시설의 연수 보고서", 「교정」, 9월호, 법무부, 1991.

박재윤.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교정의 현실과 진로」,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1.

———. "교정발전의 방향과 과제", 「교정」, 5월호, 법무부, 1987.

송주석. "일본 교정의 조직과 운영상황", 「교정」, 5월호, 법무부, 1988.

신성섭. "한국 교정행정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신치재. "교정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전망", 「교정」, 5월호, 법무부, 1990.

안해균. "교정행정의 발전과 문제", 「발전 정책 연구과정 제10회 국가정책 쎄미나자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유남영. "현행 행형법 개정의 기본적 방향", 「법조춘추」, 통권137권, 서울지방 변호사회, 1989.

이돈희. "행형법의 제문제", 「대한변호사 협회지」, 통권 제133호, 9월호, 대한변호사 협회, 1987.

———. "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 「법조춘추」, 통권137권, 서울지방 변호사회, 1989.

이양배. "신입자 및 출소자 교육", 「교정」, 10월호, 법무부, 1988.

전대양. "누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89.

황찬성. "우리나라의 비행소년 감별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1.

3. 정기간행물 및 기타.

대검찰청. 「범죄통계」, 199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1988-1990.

도서관교육연구회. 「새도서관 교육」, 대구: 형설출판사, 1972.

문화부. 「전통놀이 모음집」, 1991.

법무부. 「교정자료 Ⅰ-Ⅲ」, 자문교수논문집, 1988-1990.

———. 「법무연감」, 1989-1991.

———. 「법과질서, 그리고 인권」, 1990.

———. 「행형의 과제와 실험」, 법무자료 제120집, 1989.

법무부 교정국. 「교정」, 1982-1992. 4.

———. 「교정관계 법령집」, 1992.

———. 「교정사고 대책Ⅱ」, 1984.

———. 「교정수용통계 백년보Ⅱ」, 1988.

———. 「교정 예규」, 1982.

———. 「교정예산 명세서」, 1992.

———. 「새길」, 1982-1992. 4.

———. 「외국의 교정제도」, 1990.

———. 「일본의 교정 개황」, 1985.

———. 「재소자수용 및 처우에 관한 연구」, 서독·영국, 1981.

———. 「한국의 교정사」, 1987.

———. 「한국의 교정행정」, 1991.

———. 「속죄의 행로 - 재소자 생활수기Ⅰ」, 1985.

———. 「찬란한 내일을 위하여 - 재소자 생활수기Ⅱ」, 1991.

———. 「어둠이 빛이 되어 - 재소자 교화 성공수기Ⅰ」, 1986.

———. 「사랑이 꽃필때 - 재소자 교화 성공수기Ⅱ」, 1990.

———. 「재생의 등불 - 교도관 교화 선도수기」, 1989.

법무연수원. 「법무연구」, 제1호-제18호, 1974-1991.

———. 「범죄백서」, 1986-1991.

———. 「비상근 연구위원 논문집Ⅰ-Ⅴ」, 1987-1991.

———. 「재소자 분류와 처우 제도 - 연수교재」, 1989.

———. 「형사 정책 실무연찬회 연구보고」, 1991.

———————. 「형사 정책 실무연찬회 자료집」, 1991.

법조출판사. 「대법전」, 1992.

창작과 비평사. 「법과사회 Ⅰ-Ⅴ」, 1989-1991.

치안본부. 「범죄통계」, 1991.

한국교육출판공사. 「세계대백과 사전 Ⅰ-Ⅳ」, 1984.

한국교정교화사업소. 「교정교화 Ⅰ-Ⅲ」, 1988-1991.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1991.

———————. 「한국교정의 이념과 현실」, 제1회 학술발표회, 1990.

———————. 「한국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개선방향」, 제2회 학술발표회, 1991.

———————. 「90년대 교정행정의 방향」, 제2회 학술발표회, 1991.

———————. 「누범수형자의 효과적 처우방안」, 제3회 학술발표회, 1991.

———————. 「교정시설내의 사회화와 하위문화」, 제3회 학술발표회, 1991.

한국도서관 협회. 「도서관학 개론」, 197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2

———————. 「교정의 현실과 진로」, 제6회 형사정책세미나, 1991.

———————. 「형사정책연구 Ⅰ-Ⅸ」, 1990-1992.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Ⅰ-Ⅵ」, 1986-1991.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1992. 4. 18.

세계일보사. 「세계일보」, 1991. 5. 28.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1991. 1. 1, 1992. 5. 4, 5. 22.

평화신문사. 「평화신문」, 1988. 11. 6, 1990. 11. 25.

1. BOOKS

可藤久雄. 「犯罪者 處遇の 理論と 實際」, 慶應通信, 1984

大塚仁 外. 「行刑の 現代的 觀點」, 東京: 有斐閣, 1981.

森本益之. 「行刑の 現代的 展開」, 東京: 成文堂, 1985.

森下忠. 「刑事政策入門」, 東京: 成文堂, 1989.

Ailen, F.A. 「The Decline of the Rehabilitative Ideal」, New Haven and London, 1981.

AFSC. 「Struggle for Justice」, Philadelphia: Hill and Wang, 1971.

Bartollas, C. 「Introduction to Corrections」, 1981.

Christie, Nils. 「Limits to Pain」, Oslo: Universitets for Laget, 1981.

Cohen, Fred. 「The Discovery of Prison Reform」, Buffalo Law Review, Vol. 21, 1972.

Crime, P.T. 「Justice and Correction」, New York: Mccr-ow-Hill Book Company, 1960.

Cullen, F.T, and Gilbert, K.E. 「Reaffirming Rehabilitation」, Cincinnati: Anderson, 1982.

Gillen, John. 「Taming the Criminal」, Mont Clairn. j. Pat-terson Smith, 1931.

Green Wood, P. W. 「Selective Incapacitation」, 1982.

Gruff, S. 「Theories of Punishment Printice Hall」, Indiana univ. press, 1971.

Hagerman, M, and Doeren, S. 「Community Corrections」,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Co, 1982.

Hunt, H. L. A.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8.

Krantz, Sheldon. 「The Law of Correction, and Prisoner's Right」, West Publishing Co, 1973.

Lemert, E. M.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M. J, 1967.

McCarthy and McCarthy. 「Community-based Corrections」, California: Brooks/Colepub, 1984.

Super, D. E. 「Appraising Vocational Fitness by Means of Psychological Test」, New York, 1949.

Turner, W. B.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in Prison」, 23Stan. L. Rev. 1971.

U. 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Prison System」, 1989.

2. Articles.

森本益之. "行刑の 社會化の 現代的 意義", 「行政」, 1986. 9.

長谷川永. "魅力ある 職場", 「日本 刑政」, 第81卷1號,

1973.

Allen, F. A. "Criminal Justice, Legal Value and the Rehabilatative deal", 「Journal of Criminology」, Vol. 50, 1959.

Bonta, J and Motiuk, L. "The Diversion of Incarcerated Offenders to Correctional Half Way Hous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guency」, 24, 1987.

Cangbein, J. H. "The Historical origins at the Sanction of the Imprisonment for Serious Crime", 「Journal of Legalstudies」 5, 1976.

Gatti, uberto. "The Future of Juvenile Justice", 「제1회 국제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Greenwood, P. W. "Controlling the Crime Rate through Imprisonment", J. Wilson, ed., 「Crime and Public Policy」, 1983.

Linden, R, and Perry, L. "The Effectiveness of Prison Educational Programs", 「Journal of Offender Counseling, Services and Rehabilitation」, 6. 1982.

Pease, K. "The Future of Community Treatment of Offenders in Britain", 「Coming Penal Crime」, 1980.

Smith, J. F. "Prison Reform Through the Legilature Right", Erik, ed., 「The Politics of Punishment: Acritical analysis of Prisons in America」 (N. Y: Harper and Row Publ.), 1973.

ABSTRACT

A Study on the Better Treatment for the Unconvicted Prisoners

HWANG, INSEOK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WANG, JINSOO

This Study has put emphasis on the treatment of the unconvicted prisoners who have been neglected in the treatment up to the present. We have to put emphasis on the prison treatment of the unconvicted prisoners to prevent the increase of crime, repeated offense and the rate of repeated offense.

Chapter 1 brought up the importance of reformation on the unconvicted prisoners. For the method of study I referred to the treatises and research materials. My ten year's service at the institute for the unconvicted prisoners and the opinions of staffs, unconvicted prisoners and releasers were of help for this study.

Chapter 2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unconvicted

1973.

Allen, F. A. "Criminal Justice, Legal Value and the Rehabilatative deal", 「Journal of Criminology」, Vol. 50, 1959.

Bonta, J and Motiuk, L. "The Diversion of Incarcerated Offenders to Correctional Half Way Hous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guency」, 24, 1987.

Cangbein, J. H. "The Historical origins at the Sanction of the Imprisonment for Serious Crime", 「Journal of Legalstudies」 5, 1976.

Gatti, uberto. "The Future of Juvenile Justice", 「제1회 국제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Greenwood, P. W. "Controlling the Crime Rate through Imprisonment", J. Wilson, ed., 「Crime and Public Policy」, 1983.

Linden, R, and Perry, L. "The Effectiveness of Prison Educational Programs", 「Journal of Offender Counseling, Services and Rehabilitation」, 6. 1982.

Pease, K. "The Future of Community Treatment of Offenders in Britain", 「Coming Penal Crime」, 1980.

Smith, J. F. "Prison Reform Through the Legilature Right", Erik, ed., 「The Politics of Punishment: Acritical analysis of Prisons in America」 (N. Y: Harper and Row Publ.), 1973.

ABSTRACT

A Study on the Better Treatment for the Unconvicted Prisoners

HWANG, INSEOK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WANG, JINSOO

This Study has put emphasis on the treatment of the unconvicted prisoners who have been neglected in the treatment up to the present. We have to put emphasis on the prison treatment of the unconvicted prisoners to prevent the increase of crime, repeated offense and the rate of repeated offense.

Chapter 1 brought up the importance of reformation on the unconvicted prisoners. For the method of study I referred to the treatises and research materials. My ten year's service at the institute for the unconvicted prisoners and the opinions of staffs, unconvicted prisoners and releasers were of help for this study.

Chapter 2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unconvicted

prisoners, examined the Legal basis, human rights and restrictions, Facilities for the unconvitcted prisoners, procedure of investigation and justice, procedure of accommodation and treatmental exception of the unconvicted prisoners.

Chapter 3 has brought up the present treatmental condition of the unconvicted prisoners and problems. For the accommodation and the present treatmental condition, examined the treatment of facilities and the rights of inmates. For the problems of treatment, brought up the problem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ccommodation, institutional treatment, human rights, punishment, relief and correctional organization.

Chapter 4 dealt with the plans of better treatment for the unconvicted prisoners. Plans are

①minim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facilities, improvement of facilities.

②clearing up the excess of accommod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③education for new comers, counsel and the utilization of leisure time.

④establishment of the act of unconvicted prisoners, seperation of the institution for the unconvicted prisoners and allowance of smoking for human rights.

⑤observance of the principle of self payment, improvement of medical treatment and the communication with outside.

⑥improvement of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judge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stitution petition, executional ombudsman for the relief of rights.

⑦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prison officers.

This study brought up the theory on the unconvicted prisoners and the problems of accommodation, present treatment and correctional organization. And presented the solution for each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vent the crime or repeated crime by means of positive operation for effective treatment from beginning of accommodation.